

naboo Industrial Trends & Issues

산업동향 & 이슈

2019년 7월호 통권 제22호



CONTENTS

- I. 산업·무역·산업여신·에너지 동향
- II.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및 수익률 국내외 비교
- III. 육아휴직 관련 제도 소개 및 활용현황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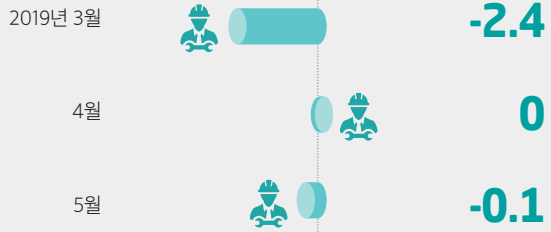
산업·무역·산업여신·에너지 동향 1월, 4월, 7월, 10월
고용·인구·연금(보험) 동향 2월, 5월, 8월, 11월
가계소득·부동산·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 3월, 6월, 9월, 12월

CONTENTS

I. 산업·무역·산업여신·에너지 동향	05
II.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및 수익률 국내외 비교	29
III. 육아휴직 관련 제도 소개 및 활용현황 국제비교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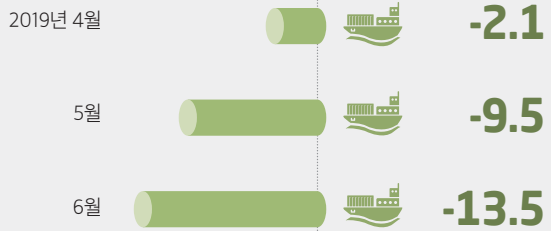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

(단위: 전년동월대비 %)



수출

(단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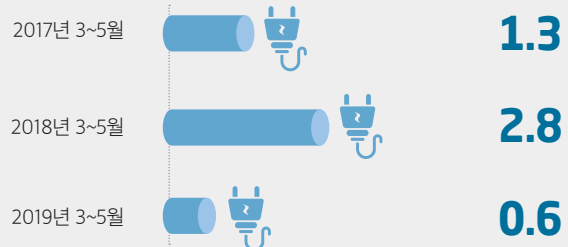
산업여신

(단위: 전년동기대비 %)



총 전력판매량

(단위: 전년동기대비 %)



산업·무역·산업여신·에너지 동향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788-4678), 경제분석총괄과(788-4670), 인구전략분석과(788-4753)

제조업 생산은 5월중 전월비 감소(-1.5%), 전년동월대비 감소(-0.1%)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조선(25.2%), 반도체(13.4%), 자동차(2.8%)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무선통신기기(-17.5%), 섬유(-8.0%), 석유(-7.9%), 컴퓨터·주변장치(-7.3%)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감소

총수출과 11대 산업의 수출은 6월중 전년동월대비 각각 13.5%와 25.7% 감소

- 전년동월대비 조선(46.4%)과 자동차(0.2%)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컴퓨터·주변장치(-27.9%)와 반도체(-25.5%), 화학(-24.5%) 등이 감소하면서 수출이 감소
 - －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세계무역이 위축되는 등 대외여건 약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며, 특히 반도체·석유화학·정유산업의 글로벌 업황부진으로 수출단가가 급락

산업여신은 2019년 1분기 중 규모가 큰 서비스업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한 1,141조원

-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제조업은 2.8%, 서비스업은 9.0%, 기타 업종이 7.2% 증가하였으며, 건설업도 1.6% 상승 전환(2018 4/4분기 △0.6%)
 - － 예금은행 취급기관의 여신은 4.9% 증가한 898.8조원이며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여신은 13.7% 증가한 242.1조원
 - － 예금은행 취급기관 여신 증가율이 전국 평균(4.9%)보다 높은 지역은 제주(11.0%), 대전(7.0%) 등이며 낮은 지역은 경남(2.6%), 전북(3.0%) 등
 - － 산업여신 증가율(6.6%)에 대한 제조업 기여도는 0.89%p, 서비스업은 5.31%p, 건설업은 0.06%p, 기타산업은 0.39%p

2019년 6월 국제유가는 59.8달러/배럴로 전년동월대비 17% 하락했으며 국제석탄 가격도 하락

- 2019년 1/4분기 에너지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했으며, 1차에너지 공급량은 석탄과 석유 공급량이 각각 12.3%와 18.6% 감소하면서 총 8.5% 감소
- 2019년 6월말 발전설비량은 119GW로 역대 최대이므로 전력수급은 안정적
 - － 2019년 상반기의 최저 전력공급예비율은 18.3%였으며, 최저 설비에비율은 44.0%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산업·무역 동향

1. 제조업 동향

가. 제조업 생산 동향

제조업 생산은 5월중 전월비 감소(-1.5%), 전년동월대비 감소(-0.1%)

- (전월비 기준) 자동차(0.6%)에서 증가하였으나, 석유(-14.2%), 무선통신기기(-7.0%), 컴퓨터·주변장치(-4.7%), 가전(-4.1%)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감소
- (전년동월대비 기준) 조선(25.2%), 반도체(13.4%), 자동차(2.8%)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무선통신기기(-17.5%), 섬유(-8.0%), 석유(-7.9%), 컴퓨터·주변장치(-7.3%)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감소

[표 1]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가중치 ¹⁾ 비중	2017	2018	2018				2019			전월 대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4월*	5월*	
광공업(원지수)	100.0	104.7	106.1	102.3	106.9	105.2	109.9	100.2	106.4	106.9	-1.7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4	1.3	-1.1	2.0	0.1	4.3	-2.1	0.2	-0.2	
제조업(원지수)	93.4	104.6	105.9	101.0	107.5	105.2	109.8	98.9	106.6	107.6	-1.5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	1.2	-1.4	1.9	-0.1	4.6	-2.1	0.0	-0.1	
자동차	10.7	-2.7	-1.4	-10.1	-4.2	-6.3	16.6	2.5	3.4	2.8	0.6
반도체	12.2	10.9	20.2	7.5	27.3	28.7	17.5	5.8	4.2	13.4	-0.6
화학	8.3	3.5	2.3	1.7	5.8	2.4	-0.5	-3.1	-4.0	-5.8	-1.2
일반기계	8.4	13.5	-2.9	3.0	-3.9	-8.3	-2.1	-11.4	-7.1	-5.9	-1.4
철강	4.4	1.6	-3.0	-2.2	-2.2	-5.2	-2.7	-2.4	-1.0	-2.5	-1.5
조선	2.2	-29.2	-13.5	-20.4	-25.8	-11.0	8.3	9.6	20.9	25.2	-1.0
석유	2.4	6.1	0.8	-2.5	4.6	1.5	-0.3	3.0	9.0	-7.9	-14.2
무선통신기기	1.4	-9.7	-7.1	-13.3	2.8	8.4	-21.2	-16.4	2.2	-17.5	-7.0
섬유	1.4	-3.1	-6.7	-6.7	-4.8	-11.4	-4.2	-9.0	-6.0	-8.0	-1.4
가전	0.7	1.2	2.3	1.6	5.4	-4.9	7.8	2.8	-1.7	-6.6	-4.1
컴퓨터·주변장치	0.4	-10.2	-7.7	-25.8	-7.1	0.1	9.0	2.5	-4.1	-7.3	-4.7

주: 1) 가중치 비중은 광공업 생산지수의 가중치(산업별부가가치/광공업 총부가가치)를 바탕으로 계산

2) *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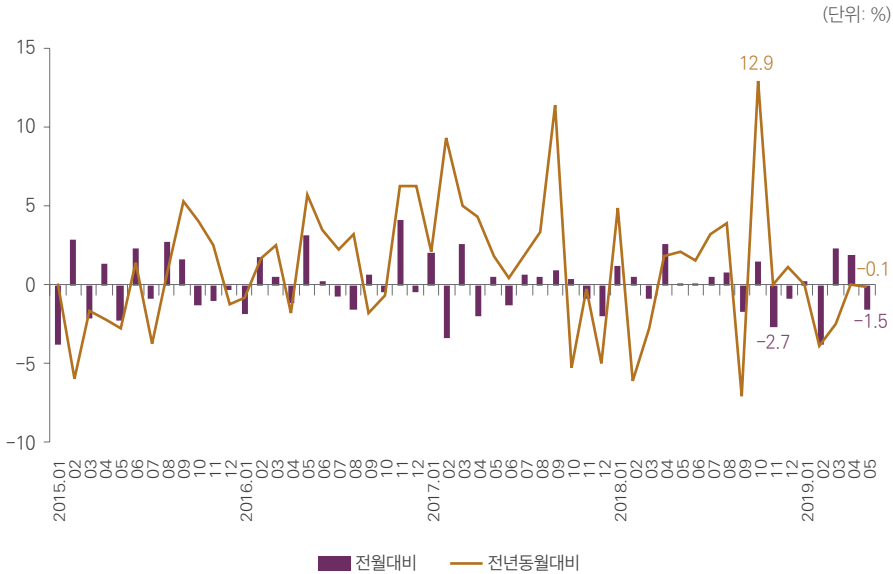
3) 통계청은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산업별 생산지수를 변경하기 때문에 2018년 1월부터 생산지수를 2015년 100을 기준으로 작성

4) 전월대비 증감률은 계절조정값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로 2019년 5월 0.1% 감소

[그림 1] 제조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나. 제조업 수출 동향

총수출과 11대 산업의 수출은 6월중 전년동월대비 각각 13.5%와 25.7% 감소

- 전년동월대비 조선(46.4%)과 자동차(0.2%)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컴퓨터·주변장치(-27.9%)와 반도체(-25.5%), 화학(-24.5%) 등이 감소하면서 수출이 감소
 -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세계무역이 위축되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며, 특히 반도체·석유화학·정유산업의 글로벌 업황부진으로 수출단가가 급락¹⁾

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2019.7.1., 참조

[표 2] 산업별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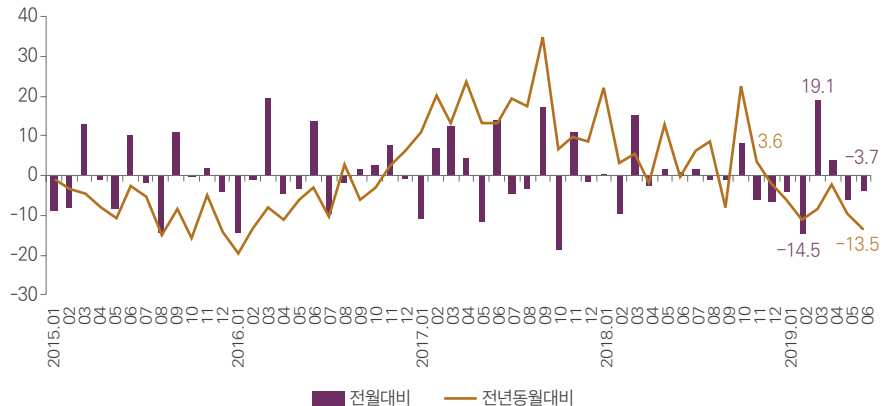
(단위: 억불, 전년동기대비, %)

	2017	2018	2018				2019			전월 대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5월	6월*	
총수출	5,736.9 (15.8)	6,048.6 (5.4)	1,450.6 (9.8)	1,516.2 (3.1)	1,536.4 (1.7)	1,545.5 (7.7)	1,327.0 (-8.5)	458.9 (-9.5)	441.8 (-13.5)	-3.7
11대 산업	4,487.1 (16.3)	4,672.1 (4.1)	1,130.3 (9.5)	1,173.3 (1.0)	1,197.3 (1.6)	1,196.0 (7.3)	1,007.2 (-10.9)	344.2 (-12.2)	294.8 (-25.7)	-14.4
자동차	648.2 (-1.4)	640.1 (-1.3)	152.5 (-7.3)	166.2 (-1.9)	146.0 (-9.9)	175.4 (15.1)	158.7 (4.1)	59.1 (5.6)	54.6 (0.2)	-7.6
반도체	979.4 (57.4)	1,267.1 (29.4)	294.9 (45.9)	317.8 (40.2)	343.2 (30.3)	311.2 (8.3)	231.9 (-21.4)	75.4 (-30.5)	83.2 (-25.5)	10.3
화학	446.9 (23.6)	499.8 (11.8)	123.6 (8.1)	126.0 (18.6)	127.7 (11.0)	122.6 (10.2)	110.9 (-10.3)	36.2 (-16.5)	31.3 (-24.5)	-13.7
일반기계	486.1 (10.1)	535.6 (10.2)	128.3 (9.2)	134.3 (8.1)	131.9 (10.0)	141.1 (13.4)	129.0 (0.5)	47.2 (5.0)	41.9 (-3.8)	-11.2
철강	342.1 (19.9)	315.1 (-0.7)	81.3 (3.2)	86.6 (-3.7)	92.8 (-6.2)	79.0 (6.1)	79.8 (-1.8)	27.2 (-7.7)	26.0 (-8.2)	-4.4
조선	421.8 (23.1)	212.8 (-49.6)	69.0 (-1.1)	39.1 (-76.9)	36.9 (-68.3)	67.7 (2.1)	52.1 (-24.6)	11.9 (44.9)	19.3 (46.4)	61.7
석유	350.4 (32.4)	463.5 (32.3)	100.2 (15.3)	119.8 (55.7)	124.3 (34.2)	119.2 (27.0)	95.8 (-4.5)	35.7 (-9.3)	31.0 (-24.2)	-13.2
무선통신기기	221.0 (-25.5)	170.9 (-22.7)	43.6 (-23.1)	43.7 (-18.1)	44.0 (-16.9)	39.6 (-31.8)	31.8 (-27.2)	10.9 (-32.2)	11.5 (-23.0)	5.2
섬유	137.4 (-0.5)	140.8 (2.5)	34.0 (4.6)	37.8 (5.2)	33.4 (-4.6)	35.6 (4.7)	31.6 (-7.0)	12.3 (-3.9)	10.7 (-15.3)	-13.2
가전	88.3 (-22.2)	72.2 (-18.3)	18.8 (-17.7)	18.1 (-19.1)	17.4 (-26.4)	17.9 (-8.1)	17.7 (-6.1)	6.1 (-1.6)	5.4 (-2.8)	-11.3
컴퓨터·주변장치	365.6 (9.1)	354.4 (-3.1)	84.2 (-2.2)	83.8 (-3.7)	99.7 (0.7)	86.7 (-7.3)	68.3 (-19.0)	22.2 (-18.0)	21.9 (-27.9)	-1.1

총수출 증감률은 전년 동월대비로 2019년 5월 -9.5%에서 6월 -13.5% 하락폭 증가

자료: 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그림 2] 총수출 증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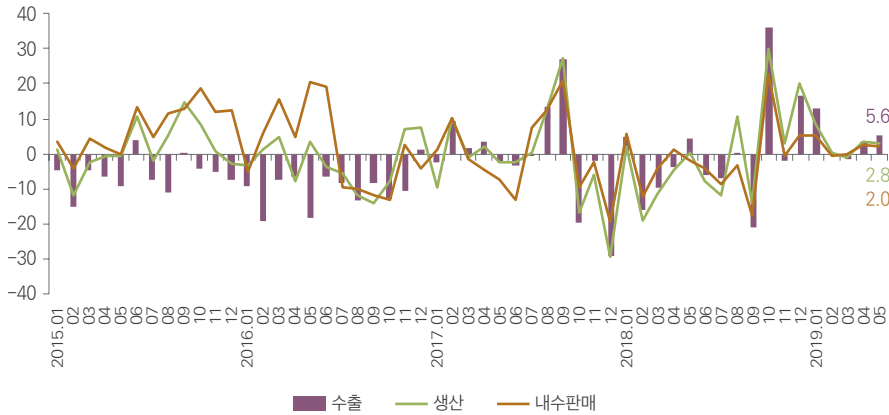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다. 주요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 동향

[그림 3] 5대산업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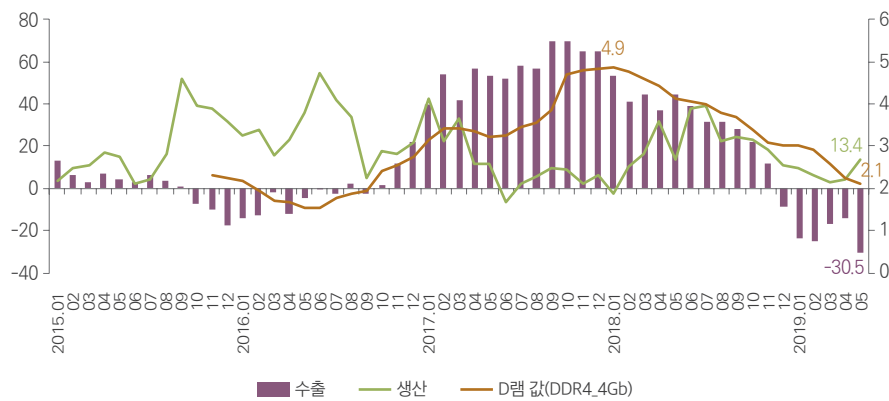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동차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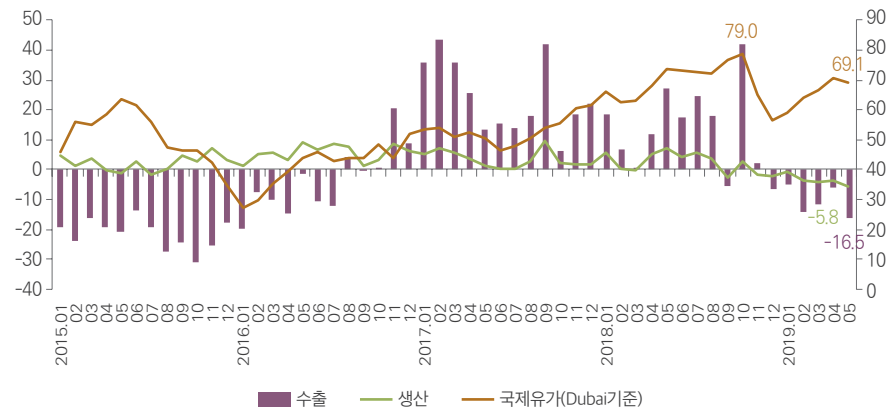
자동차 생산은 5월중 수출물량 증가(5.6%)와 내수판매증가(2.0%)로 생산이 2.8% 증가

반도체산업



반도체 품목 단가(D램 값 등) 하락과 수출감소(-30.5%)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13.4% 증가함에 따라 재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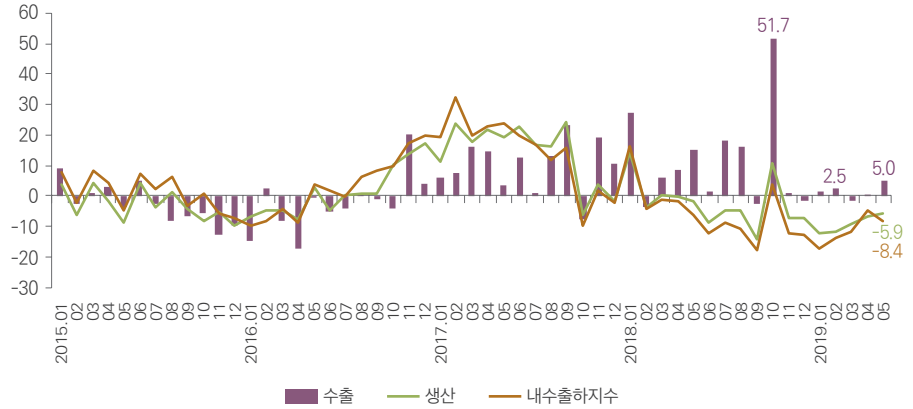
화학산업



국제유가(Dubai 기준 등) 하락과 화학제품의 수출 감소(-16.5%)에 따라 화학산업 생산은 5.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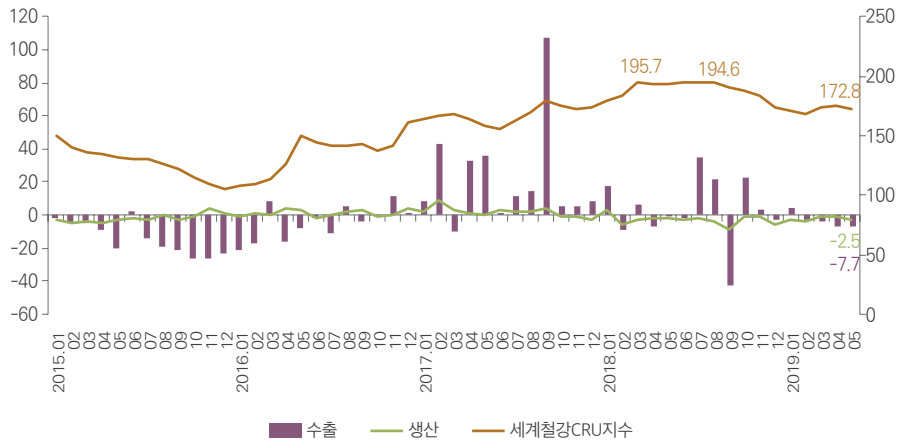
일반기계는 5월중 수출이 5.0% 증가하였으나 내수출하가 8.4% 감소하면서 생산이 5.9% 감소

일반기계산업



철강 생산은 5월중 세계철강 값(CRU 지수) 하락과 함께 수출이 7.7% 감소함에 따라 생산도 2.5% 감소

철강산업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자동차공업협회, Bloomberg, CRU Group, Dramexchange.

라. 서비스업 생산 동향

서비스업 생산은 5월중 전월대비 0.1% 증가,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 (전월대비 기준) 전문, 과학 및 기술(-1.4%), 운수(-1.3%), 예술·스포츠·여가(-1.0%) 등이 감소하였으나, 도매 및 소매(1.8%), 하수·폐기물 처리(1.9%)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증가
- (전년동월대비 기준) 숙박 및 음식점(-2.0%), 운수(-1.7%), 부동산 및 임대(-1.6%), 교육(-1.2%)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11.7%), 출판·영상·방송(4.5%)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증가

[표 3] 서비스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가중치 ¹⁾ 비중	2017	2018	2018				201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4월*	5월*	전월 대비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4.5	106.7	103.4	106.9	105.9	110.3	104.5	107.5	109.1	0.1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9	2.2	2.5	2.2	0.8	2.7	1.1	1.5	2.1	
도매 및 소매	21.1	0.7	1.5	2.2	1.8	-0.3	1.9	-0.6	-0.6	1.6	1.8
금융 및 보험	14.1	5.3	6.3	8.1	7.7	4.0	3.3	1.0	1.9	2.5	-0.1
교육	10.6	0.0	0.1	0.3	0.3	-0.9	0.7	-0.8	-0.2	-1.2	-0.9
보건 및 사회복지	9.4	7.1	6.5	3.3	2.1	7.1	10.3	8.4	10.5	11.7	0.4
운수	6.2	1.6	2.2	1.2	3.8	0.5	3.0	1.2	-0.6	-1.7	-1.3
출판·영상·방송	8.0	1.6	1.5	3.8	2.1	1.3	-0.8	3.0	3.7	4.5	-0.3
전문, 과학 및 기술	7.1	-1.6	0.8	-0.3	0.6	-1.5	4.2	0.6	2.5	2.3	-1.4
숙박 및 음식점	9.0	-1.9	-1.9	-3.0	-2.5	-2.7	0.6	-1.3	-1.7	-2.0	-0.3
사업시설관리지원	4.8	4.3	0.6	3.8	1.0	-2.3	-0.2	-0.2	2.5	2.7	0.2
협회·수리·기타개인	3.2	0.0	0.7	1.6	1.1	-2.6	3.0	-2.2	0.6	0.4	-0.8
부동산 및 임대	3.2	1.2	0.2	2.0	-1.4	-2.9	3.3	-2.9	-1.8	-1.6	1.1
예술·스포츠·여가	2.2	0.2	-0.6	0.4	-0.9	-2.3	0.6	2.3	0.4	0.2	-1.0
하수·폐기물 처리	1.1	0.4	3.1	0.4	5.8	0.7	5.1	-1.8	-3.2	0.3	1.9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로 2019년 5월 2.1% 증가

주: 1) 가중치 비중은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가중치(산업별부가가치/서비스업 총부가가치)를 바탕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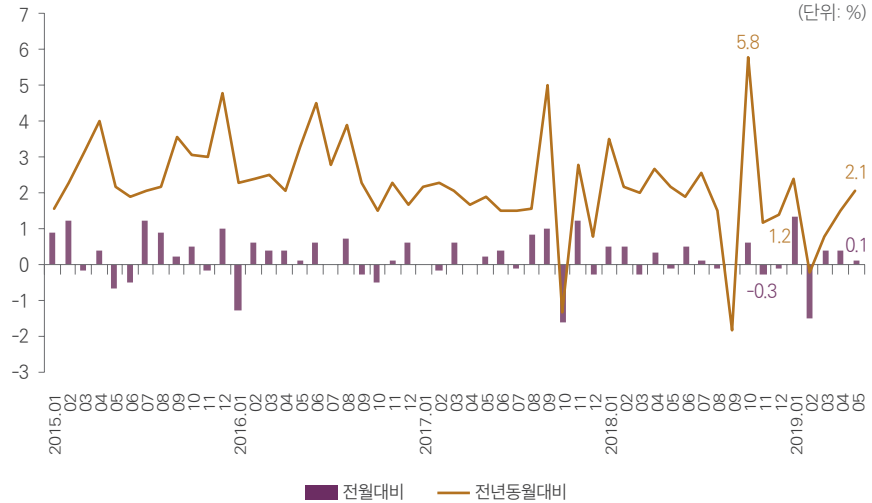
2) *는 잠정치

3) 통계청은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산업별 생산지수를 변경하기 때문에 2018년 1월부터 생산지수를 2015년 100을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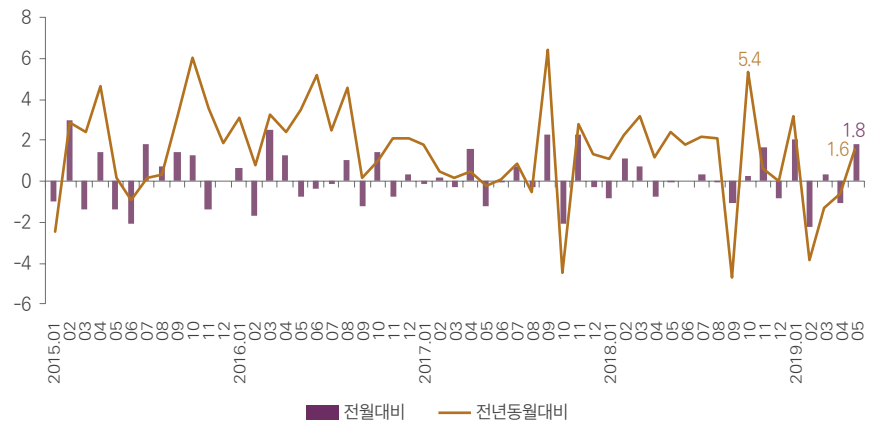
4) 전월대비 증감률은 계절조정값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그림 4]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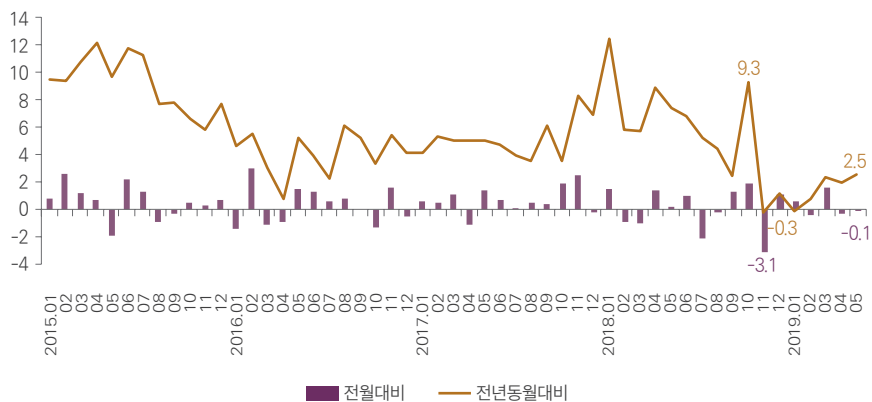


도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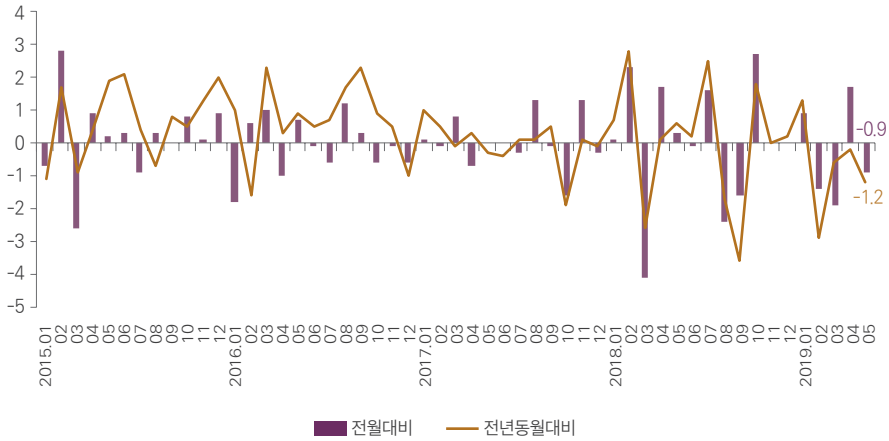
도소매업 생산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2.5%)에서 감소하였으나 소매업(1.7%), 소매업(2.1%)이 증가함에 따라 1.6% 증가

금융 및 보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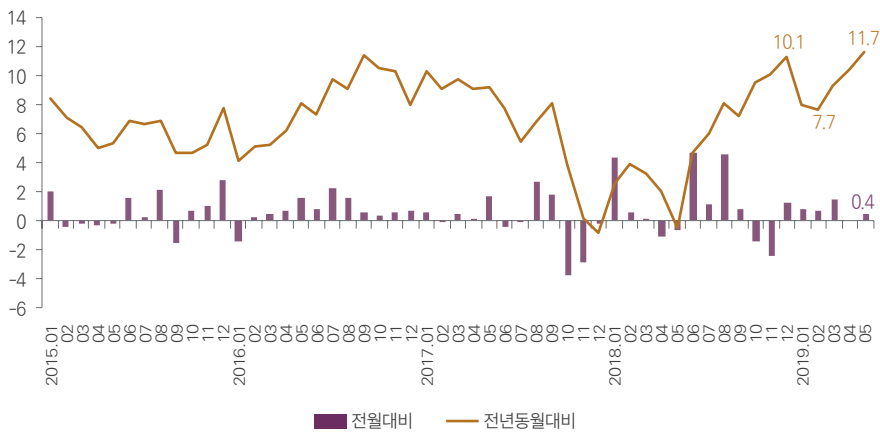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12.5%)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업(6.6%), 보험업(1.5%)이 늘어 2.5% 증가

교육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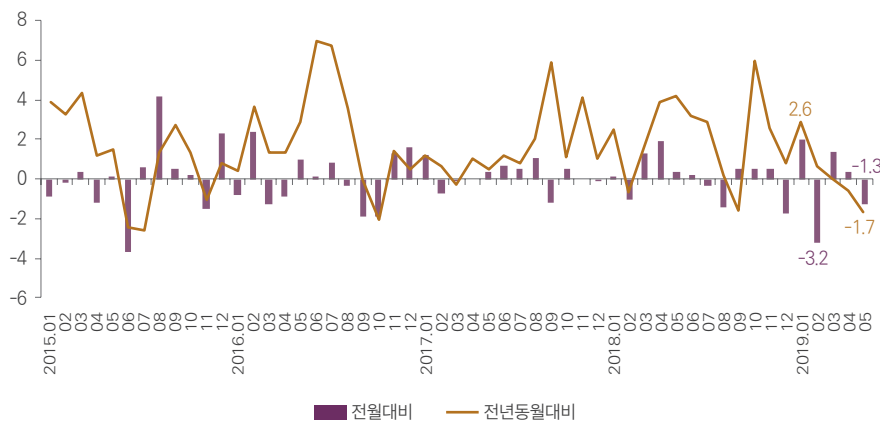
초등교육기관(-0.5%),
중등교육기관(-1.3%),
고등교육기관(-1.2%),
학원(-3.5%)이 모두 감소하여 교육서비스업의 생산은 1.2% 감소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13.1%)과 사회복지 서비스업(5.2%)이 모두 증가하여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생산은 11.7% 증가

운수업



항공운송업(3.9%), 수상운송업(3.0%)은 증가하였으나, 육상운송업(-4.5%), 창고 및 운송관련업(-0.5%)이 줄어 1.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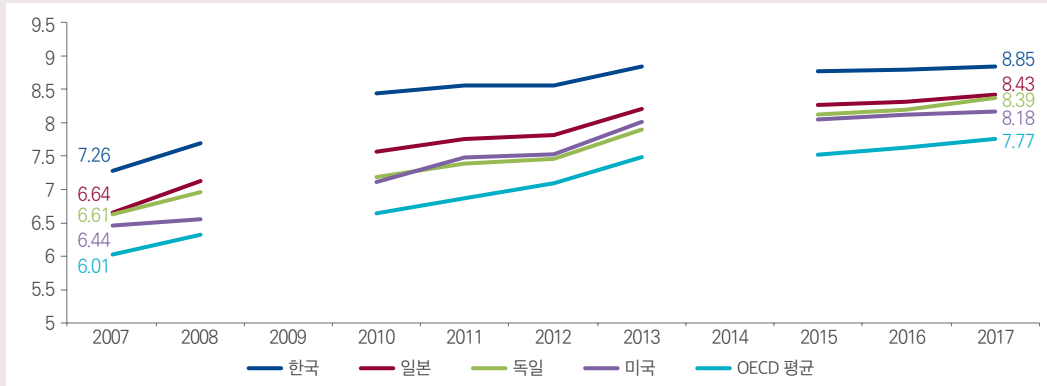
주요국의 ICT 및 글로벌화 지수 추이

최근 ICT 발전과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경제*가 각국의 핵심성장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한국 ICT 발전지수는 OECD 평균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보다 높은 수준

*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란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업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

ICT 발전 지수(Development Index)

(단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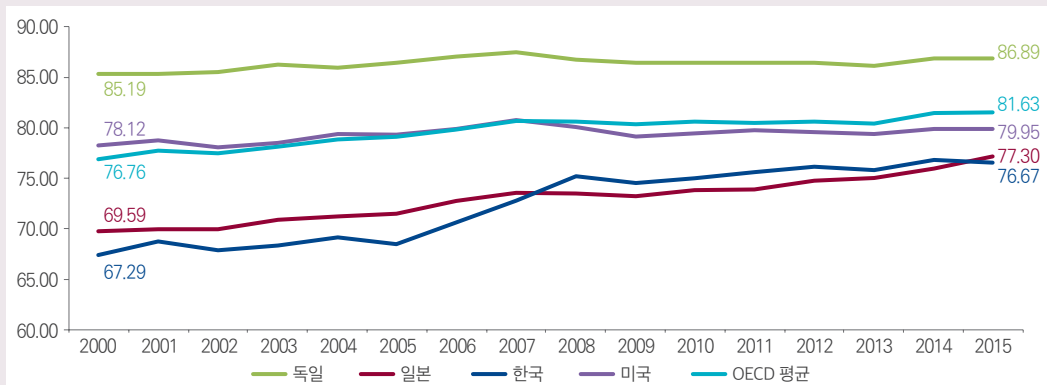
주: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발표하는 지수로 누락년도 2009년과 2014년이며, ICT기술의 발전 정도를 국가별, 연도별로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총 11가지 indicator로 종합함

자료: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참조

다만, 디지털경제를 통한 산업혁신은 국가 간의 R&D 네트워크 확대 등 세계화가 필요한데²⁾, 한국의 글로벌화 지수는 OECD 평균 수준을 밑돌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미국, 일본에 못 미치는 수준

KOF 글로벌화 지수(Globalization Index)

(단위: 지수 값)



자료: 취리히 공과대학의 KOF경제연구소(Swiss Economic Institute)에서 2002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화지수(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세계화를 1970년부터 매년 측정)

산업여신 동향

1. 산업여신 잔액

산업여신*은 2019년 1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6.6% 증가

- 제조업 여신은 전년동기대비 기타운송장비업(-16.9%), 1차금속업(-2.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기타제조업(13.0%), 음식료품업(9.9%)등이 늘어 2.8% 증가
- 서비스업 여신은 금융 및 보험업(-4.1%)에서 감소하였으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3.2%), 부동산업(12.6%), 도매 및 소매업(11.6%), 숙박 및 음식점업(10.7%) 등이 늘어 9.0% 증가
- 건설업 여신과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을 포함하는 기타업 여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 7.2% 증가

* 산업여신은 업종별(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로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같은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을 의미하며 한국은행에서 조사하여 분기별(잔액기준)로 발표

[표 1] 산업여신 동향

(단위: 조원, 전년동기대비 %, %)

	2017	2018				2019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증가율	구성비
산업여신 합계	1,051.5	1069.8	1,082.7	1,107.0	1,121.3	1140.9	6.6	100.0
제조업	337.5	341.7	342.2	347.0	344.8	351.2	2.8	30.8
금속가공제품·기계장비	79.5	80.7	81.2	81.8	81.2	82.9	2.6	7.3
석유·화학·의약품·플라스틱	52.0	53.2	54.4	54.8	54.8	55.7	4.6	4.9
기타	33.8	35.2	36.7	37.6	38.9	39.8	13.0	3.5
자동차·트레일러	33.2	33.4	32.5	32.8	32.4	33.0	-0.9	2.9
1차금속	26.7	27.4	26.8	26.6	25.7	26.8	-2.3	2.3
음식료품	21.9	22.1	22.3	22.8	23.5	24.3	9.9	2.1
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장비	22.6	22.7	22.9	23.7	23.2	23.7	4.5	2.1
섬유·의복·신발	19.9	19.9	19.6	20.0	19.7	19.9	0.1	1.7
전기장비	15.0	15.3	15.4	15.9	15.7	15.9	4.3	1.4
목재·종이·인쇄	14.7	14.8	14.7	14.9	15.0	15.0	1.9	1.3
기타운송장비	18.3	17.0	15.7	16.1	14.7	14.1	-16.9	1.2
서비스업	618.3	630.1	641.7	659.7	677.0	686.9	9.0	60.2
부동산업	201.2	209.0	216.0	224.9	231.9	235.4	12.6	20.6
도매 및 소매업	130.5	133.5	137.7	141.7	144.5	149.0	11.6	13.1
금융 및 보험업	70.8	69.4	65.7	66.2	68.7	66.6	-4.1	5.8
공공행정 등 기타서비스	55.9	55.8	55.7	56.1	57.6	58.2	4.3	5.1
숙박 및 음식점업	50.4	51.3	53.0	54.6	55.6	56.8	10.7	5.0
운수 및 창고업	26.7	27.4	28.2	28.3	28.4	28.6	4.7	2.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8	26.2	26.8	27.6	28.2	28.6	9.2	2.5
정보통신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27.1	26.9	27.6	28.2	28.2	28.8	6.8	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0	13.7	13.8	14.4	15.9	16.9	23.2	1.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9.2	9.0	9.1	9.5	9.7	9.8	8.9	0.9
교육서비스업	7.8	7.9	8.0	8.2	8.3	8.3	4.7	0.7
건설업	39.4	40.7	40.3	41.1	39.2	41.4	1.6	3.6
기타	56.3	57.2	58.5	59.2	60.3	61.3	7.2	5.4

주: 기타는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등 포함

자료: 한국은행 산업별 대출금 자료(2019. 6.접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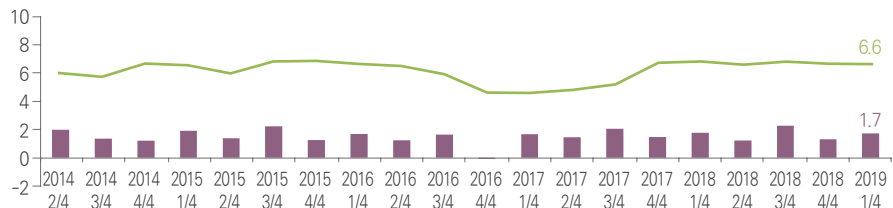
2019년 1분기 산업여신은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한 총 1,141조원

[그림 1] 주요산업 여신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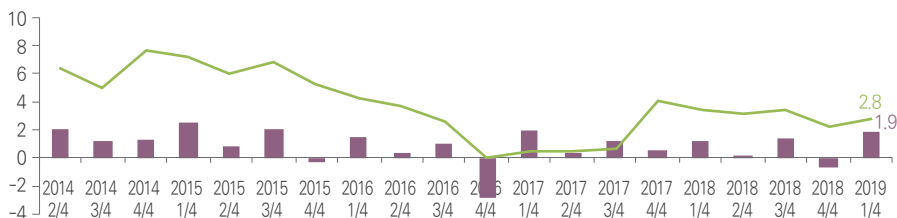
산업여신 합계

산업여신은 서비스업(9.0%)과 기타업(7.2%)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하였고 분기별로는 전기대비 1.7%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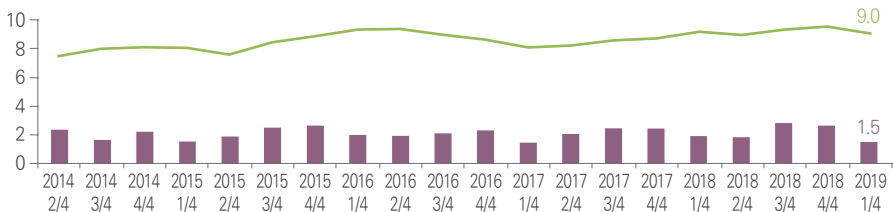
제조업

제조업 여신은 기타제조업(13.0%)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였고 분기별로는 전기대비 1.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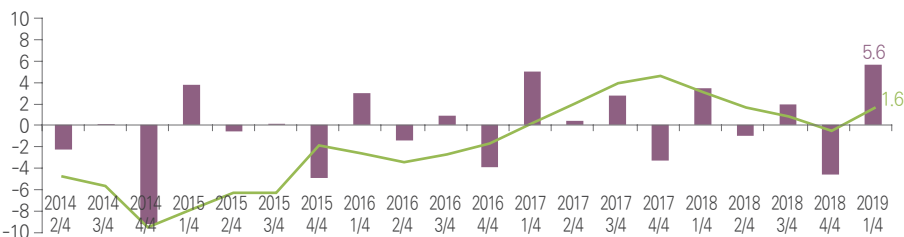
서비스업

서비스업 여신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3.2%)등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9.0% 증가하였고 분기별로는 전기대비 1.5%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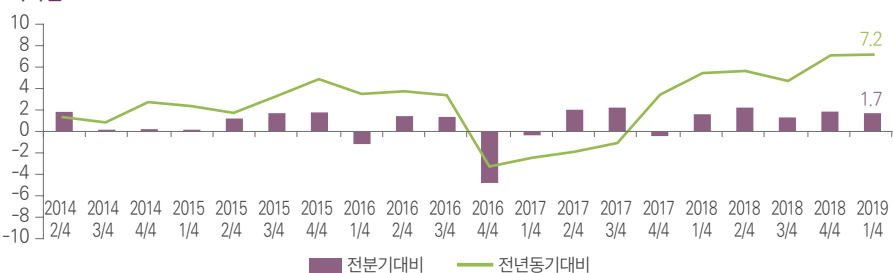
건설업

건설업 여신은 전년 동기대비 1.6%증가하였고 전기대비 5.6% 증가



기타업

기타업 여신은 전년동기대비 7.2%증가하였고 전기대비 1.7%상승



■ 전분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산업별 대출금 자료(2019. 6.접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 예금취급 기관별 산업여신

2019년 1분기 중 예금은행 취급기관의 여신은 전년동기대비 4.9%,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여신은 13.7% 증가

- 예금은행의 여신은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한 898.8조원
-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여신은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한 242.1조원

2019년 1분기 예금은행의 여신은 전년동기대비 4.9%,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여신은 13.7% 증가

[표 2] 예금취급 기관별 산업여신 동향

(단위: 조원, 전년동기대비 %, %)

	2015	2016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증가율	구성비
산업여신 합계(A+B)	943.3	985.5	1051.5	1,069.8	1,082.7	1,107.0	1,121.3	1140.9	6.6	100.0
예금은행 취급 기관 여신합계(A)	783.1	806.7	843.7	857.0	865.3	881.4	887.2	898.8	4.9	78.8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여신합계(B)	160.2	178.8	207.9	212.9	217.5	225.6	234.1	242.1	13.7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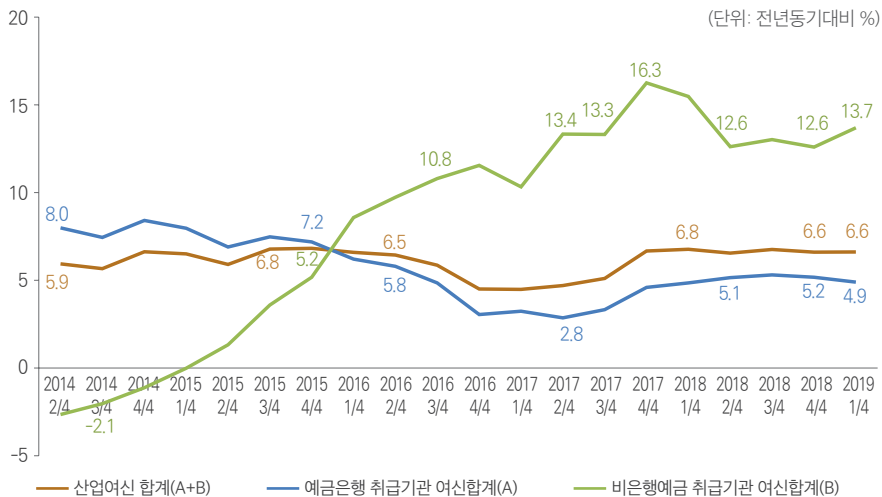
주: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은 수출입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자료: 한국은행 예금은행 산업별 대출금 자료(2019. 6.접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전년동기대비 예금은행 여신 증가율은 0.3%p 감소(5.2%→4.9%)하였고,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여신 증가율은 1.1%p 증가(12.6%→13.7%)

예금은행 여신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3%p 감소,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은 1.1%p 증가

[그림 2] 예금취급 기관별 산업여신 증감률 추이



주: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은 수출입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자료: 한국은행 예금은행 산업별 대출금 자료(2019. 6.접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3. 지역별 산업여신

예금은행의 지역별 산업여신*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와 대전, 낮은 지역은 경남과 전북

2019년 1분기 예금은행의 지역별 산업여신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와 대전, 낮은 지역은 경남과 전북

- 예금은행 여신 증가율이 전국 평균인 4.9%보다 높은 지역은 제주(11.0%), 대전(7.0%), 강원(6.6%), 인천(6.5%), 충북(6.3%) 등
- 예금은행 여신 증가율이 전국 평균인 4.9%보다 낮은 지역은 경남(2.6%), 전북(3.0%), 충남(3.3%), 부산(3.4%), 광주(3.7%) 등

* 전체 산업여신 중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지역별 산업여신은 조사되지 않으며, 예금은행의 지역별 산업여신만 조사됨

[표 3] 예금은행의 지역별 산업여신 동향

(단위: 조원, 전년동기대비 %, %)

	2017	2018				2019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증가율	구성비
산업여신 합계(A+B)	1051.5	1069.8	1082.7	1107.0	1121.3	1140.9	6.6	100.0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여신합계(A)	207.9	212.9	217.5	225.6	234.1	242.1	13.7	21.2
예금은행 여신합계, 전국(B)	843.7	857.0	865.3	881.4	887.2	898.8	4.9	78.8
서울	331.5	337.3	341.3	346.5	349.8	353.8	4.9	31.0
경기	156.5	159.7	161.8	165.6	166.2	169.1	5.9	14.8
부산	62.2	63.0	63.4	64.2	64.5	65.1	3.4	5.7
경남	47.6	48.0	47.8	48.6	48.4	49.2	2.6	4.3
대구	45.2	45.7	45.8	47.0	47.1	47.6	4.3	4.2
인천	40.6	41.4	42.0	42.9	43.3	44.1	6.5	3.9
경북	25.6	26.1	26.2	26.9	27.0	27.1	3.8	2.4
충남	20.1	20.2	20.1	20.3	20.8	20.9	3.3	1.8
광주	18.6	18.8	18.9	19.4	19.1	19.5	3.7	1.7
전북	18.0	17.9	17.9	18.1	18.3	18.5	3.0	1.6
대전	15.9	16.2	16.6	17.0	17.2	17.4	7.0	1.5
울산	15.1	15.1	15.3	15.7	15.7	15.9	5.1	1.4
충북	13.8	14.3	14.5	14.8	14.9	15.2	6.3	1.3
전남	13.7	13.6	13.4	13.9	14.1	14.3	4.7	1.2
강원	9.4	9.5	9.7	9.9	10.0	10.1	6.6	0.9
제주	7.5	7.7	7.9	8.2	8.3	8.5	11.0	0.7
세종	2.3	2.4	2.5	2.5	2.5	2.5	5.8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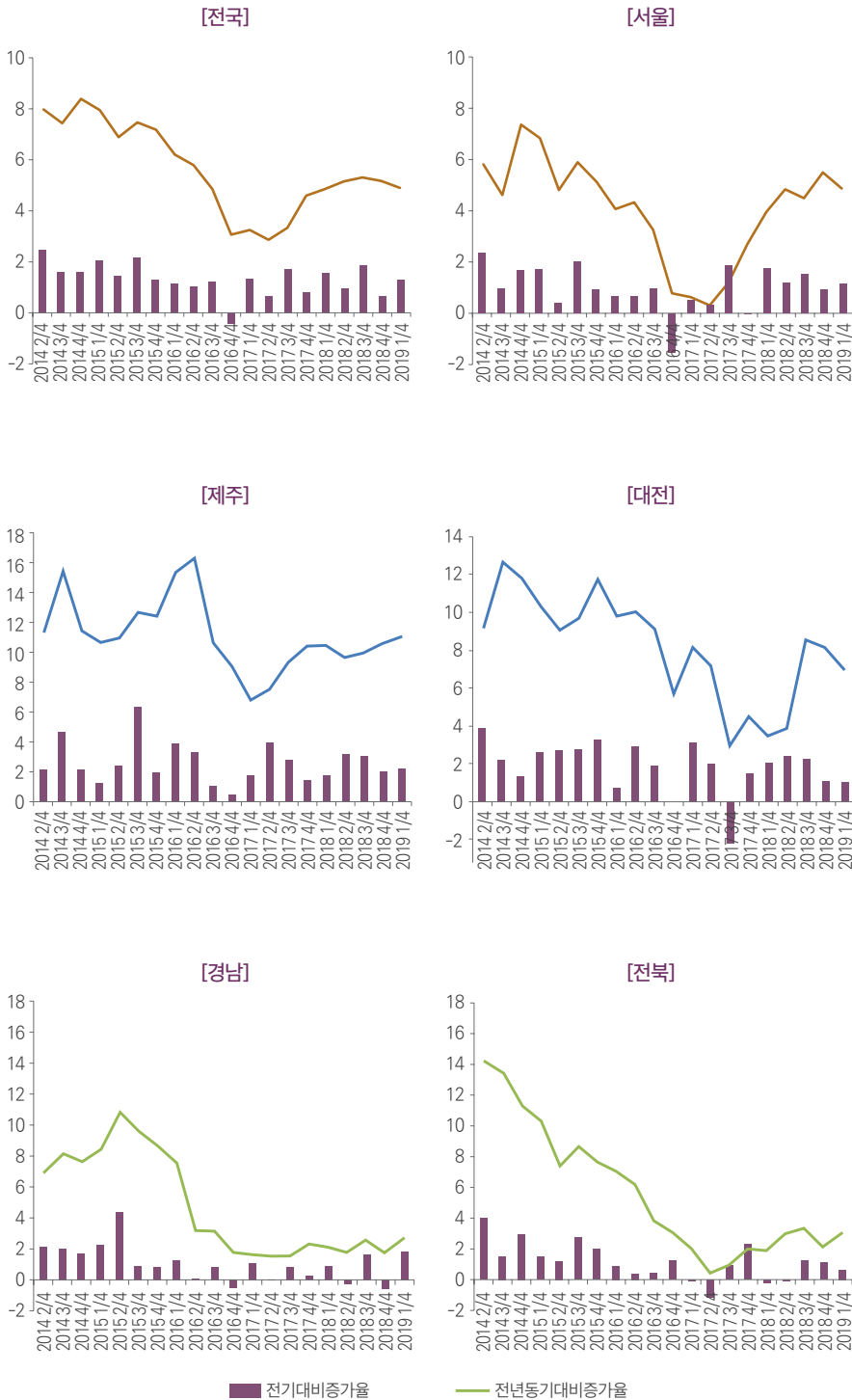
주: 1.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지역별 산업여신은 미조사되어 구분할 수 없음

2.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은 수출입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자료: 한국은행 예금은행 지역별 대출금 자료(2019. 6.접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그림 3] 주요 지역별 예금은행 산업여신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한국은행 예금은행 지역별 대출금 자료(2019. 6. 접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4. 산업여신 증감 기여도

전체 산업여신 증가율(6.64%)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 비교 시 제조업은 0.89%p, 서비스업은 5.31%p의 기여도를 나타냄

전년동기대비 산업여신 증가율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는 서비스업 제조업, 기타업 순

- 전체 산업여신 증가율에 대한 제조업의 전년동기대비 기여도는 전기보다 0.20%p 증가한 0.89%p
- 전체 산업여신 증가율에 대한 서비스업의 전년동기대비 기여도는 전기보다 0.27%p 감소한 5.31%p
- 전체 산업여신 증가율에 대한 건설업의 전년동기대비 기여도는 전기보다 0.08%p 증가한 0.06%p, 기타업은 0.01%p 증가한 0.39%p

[표 4] 산업여신 순증액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p)

	2017	2018 1분기	2018 2분기	2018 3분기	2018 4분기	2019 1분기
순증감률	6.70	6.80	6.57	6.79	6.63	6.64
제조업	1.34	1.12	1.04	1.10	0.69	0.89
서비스업	4.99	5.26	5.16	5.40	5.58	5.31
건설업	0.18	0.12	0.06	0.03	-0.02	0.06
기타	0.19	0.30	0.31	0.26	0.38	0.39

주: 기타는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등, 각 업종별 기여도의 합이 순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산업별 대출금 자료(2019. 6.접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제조업 중 기타 제조업의 산업여신 증가 기여도가 0.43%p로 가장 높음

제조업의 산업여신 증가 기여도(0.89%p)에 대해 11개 세부업종 중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인 업종은 비금속광물·의료·정밀·가구제조 등을 포함하는 기타 제조업(0.43%p)

- 제조업 세부업종 11개 중 전년동기대비 기여도가 낮은 업종은 기타운송장비업(-0.27%p), 1차금속업(-0.06%p), 자동차·트레일러업(-0.03%p) 등
- 제조업 중 전년동기대비 기여도가 높은 업종은 기타제조업(0.43%p), 석유·화학·의약품·플라스틱업(0.23%p), 음식료품업(0.20%p) 등

서비스업 중 부동산업의 산업여신 증가 기여도가 2.46%p로 가장 높음

서비스업의 산업여신 증가 기여도(5.31%p)에 대해 11개 세부업종 중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인 업종은 부동산업(2.46%p)³⁾

- 서비스업 세부업종 11개 중 전년동기대비 기여도가 낮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0.27%p), 교육서비스업(0.04%p) 등

3)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및 기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부동산 관리업, 자문 및 중개업, 감정평가업 등)'을 포함

- 서비스업 중 전년동기대비 기여도가 높은 업종은 부동산업(2.46%p), 도매 및 소매업(1.45%p), 숙박 및 음식점업(0.51%p),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0.30%p) 등

[표 5] 산업대출 증가에 대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여도(2019년 1분기)

(단위: 전년동기대비 %p)

업종	기여도	업종	기여도
제조업	0.89	서비스업	5.31
기타	0.43	부동산업	2.46
석유·화학·의약품·플라스틱	0.23	도매 및 소매업	1.45
음식료품	0.20	숙박 및 음식점업	0.51
금속가공제품·기계장비	0.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30
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장비	0.1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22
전기장비	0.06	공공행정 등 기타서비스	0.22
목재·종이·인쇄	0.03	정보통신,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0.17
섬유·의복·신발	0.00	운수 및 창고업	0.12
자동차·트레일러	-0.0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0.07
1차금속	-0.06	교육서비스업	0.04
기타운송장비	-0.27	금융 및 보험업	-0.27

주: 제조업·서비스업 전체기여도는 각 부문별 기여도의 합과 같음

자료: 한국은행 산업별 대출금 자료(2019. 6.접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전국 예금은행 산업여신* 증가 기여도(4.88%p)에 대해 17개 지역 중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인 지역은 서울(1.92%p)

지역별 기여도 중 서울의 산업여신증가기여도가 1.92%p로 가장 높음

- 전국 17개 지역 중 전년동기대비 여신 증가 기여도가 높은 지역은 서울(1.92%p), 경기(1.10%p), 인천(0.31%p), 부산(0.25%p) 등
- 전국 17개 지역 중 전년동기대비 여신 증가 기여도가 낮은 지역은 세종(0.02%p), 전북(0.06%p), 강원(0.07%p), 전남(0.07%p) 등

* 전체 산업여신 중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지역별 산업여신은 조사되지 않으며, 예금은행의 지역별 산업여신만 조사됨

[표 6] 전국 예금은행 여신 기여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2019년 1분기)

(단위: 전년동기대비 %p)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경남	대전	경북	충북	제주	울산	광주	충남	전남	강원	전북	세종
4.88	1.92	1.10	0.31	0.25	0.23	0.15	0.13	0.12	0.11	0.10	0.09	0.08	0.08	0.07	0.07	0.06	0.02

주: 1. 전국 예금은행 여신 기여도는 각 지역별 기여도의 합과 같음

2.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수출입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의 지역별 산업여신은 미조사되어 구분할 수 없음

자료: 한국은행 산업별 대출금 자료(2019. 3.접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은행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별 산업여신 현황

2019년 1분기 기준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산업여신 규모는 242.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

- 같은 기간 동안 은행예금 취급기관은 4.9% 증가한 898.8조원
-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은 수출입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지칭

산업여신 동향(2019년 1분기)

(단위: 조원, 전년동기대비 %, %)

	전체			은행			비은행		
	1분기	증가율	구성비	1분기	증가율	구성비	1분기	증가율	구성비
산업여신 합계	1140.9	6.6	100.0	898.8	4.9	100.0	242.1	13.7	100.0
제조업	351.2	2.8	30.8	322.1	2.1	35.8	29.1	10.3	12.0
금속가공제품·기계장비	82.9	2.6	7.3	79.9	2.6	8.9	3.0	2.8	1.2
석유·화학·의약품·플라스틱	55.7	4.6	4.9	53.0	3.9	5.9	2.6	19.8	1.1
기타	39.8	13.0	3.5	27.4	6.1	3.0	12.4	31.7	5.1
자동차·트레일러	33.0	-0.9	2.9	31.5	-1.4	3.5	1.5	9.2	0.6
1차금속	26.8	-2.3	2.3	25.6	-3.1	2.9	1.1	18.4	0.5
음식료품	24.3	9.9	2.1	23.1	9.6	2.6	1.2	14.9	0.5
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장비	23.7	4.5	2.1	21.9	2.1	2.4	1.8	48.5	0.7
섬유·의복·신발	19.9	0.1	1.7	19.3	-0.2	2.2	0.6	11.3	0.3
전기장비	15.9	4.3	1.4	15.5	4.0	1.7	0.5	13.3	0.2
목재·종이·인쇄	15.0	1.9	1.3	14.5	1.6	1.6	0.5	13.1	0.2
기타운송장비	14.1	-16.9	1.2	10.3	-7.9	1.1	3.8	-34.2	1.6
서비스업	686.9	9.0	60.2	507.6	7.0	56.5	179.3	15.1	74.1
부동산업	235.4	12.6	20.6	185.7	9.4	20.7	49.7	26.5	20.5
도매 및 소매업	149.0	11.6	13.1	115.4	7.3	12.8	33.6	29.5	13.9
금융 및 보험업	66.6	-4.1	5.8	34.1	5.4	3.8	32.5	-12.4	13.4
공공행정 등 기타서비스	58.2	4.3	5.1	25.1	-11.6	2.8	33.1	20.7	13.7
숙박 및 음식점업	56.8	10.7	5.0	39.0	6.9	4.3	17.8	20.3	7.4
운수 및 창고업	28.6	4.7	2.5	25.7	3.9	2.9	2.9	11.9	1.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8.6	9.2	2.5	26.1	8.3	2.9	2.5	19.7	1.0
정보통신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28.8	6.8	2.5	25.9	8.1	2.9	2.9	-3.6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9	23.2	1.5	14.4	23.1	1.6	2.5	23.9	1.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9.8	8.9	0.9	8.8	8.2	1.0	1.0	15.4	0.4
교육서비스업	8.3	4.7	0.7	7.4	3.8	0.8	0.9	12.8	0.4
건설업	41.4	1.6	3.6	27.8	-2.4	3.1	13.6	10.9	5.6
기타	61.3	7.2	5.4	41.3	6.3	4.6	20.0	9.1	8.3

주: 기타는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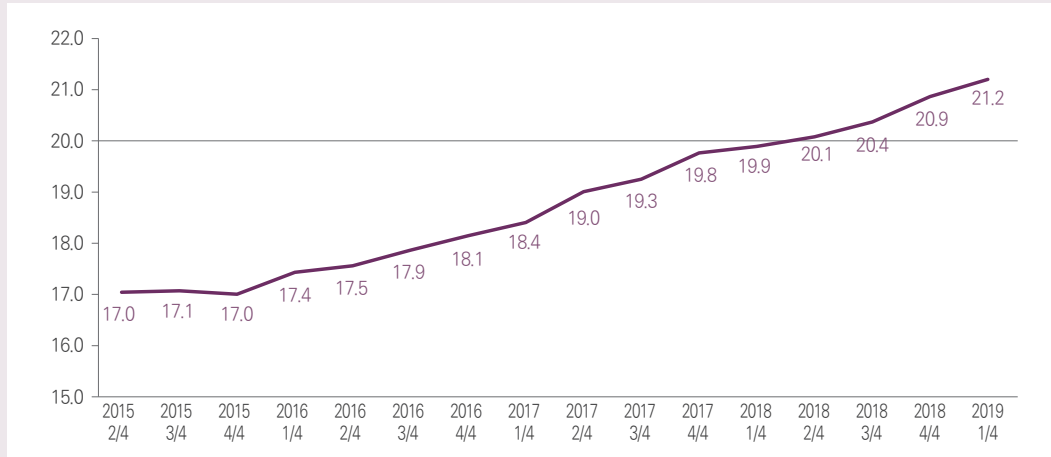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산업별 대출금 자료(2019. 6.접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016년 이후로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산업여신 증가율이 은행예금 기관을 초과하였으며, 최근 그 격차가 2배 이상 나타남

-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산업여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전체 산업여신에서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2분기 17.0%에서 2019년 1분기 21.2%로 4.2%p 증가하였음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산업여신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산업별 대출금 자료(2019. 6.접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산업여신의 증감 기여도를 보면, 은행과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모두 부동산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일부 업종에서는 대출 증감 추이가 은행-비은행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

- 공공행정 등 기타서비스업, 섬유·의복·신발업, 1차금속업, 건설업의 경우 예금은행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출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비은행기관에서는 증가
 -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여신 공급 및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

산업여신 증가에 대한 업종별 기여도(2019년 1분기)

(단위: 전년동기대비 %p)

업종	기여도		업종	기여도	
	은행	비은행		은행	비은행
제조업	0.79	1.28	서비스업	3.89	11.02
음식료품	0.24	0.07	도매 및 소매업	0.92	3.59
섬유·의복·신발	-0.00	0.03	운수 및 창고업	0.11	0.15
목재·종이·인쇄	0.03	0.03	숙박 및 음식점업	0.29	1.41
석유·화학·의약품·플라스틱	0.24	0.20	정보통신,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0.23	-0.05
1차금속	-0.09	0.08	금융 및 보험업	0.21	-2.16
금속가공제품·기계장비	0.24	0.04	부동산업	1.86	4.88
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장비	0.05	0.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32	0.22
전기장비	0.07	0.0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0.08	0.06
자동차·트레일러	-0.05	0.06	교육서비스업	0.03	0.05
기타운송장비	-0.10	-0.9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23	0.19
기타	0.18	1.41	공공행정 등 기타서비스	-0.39	2.67
건설업	-0.08	0.63	기타	0.29	0.79

주: 제조업·서비스업 전체기여도는 각 부문별 기여도의 합과 같음

자료: 한국은행 산업별 대출금 자료(2019. 6.접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에너지 동향

1. 주요 에너지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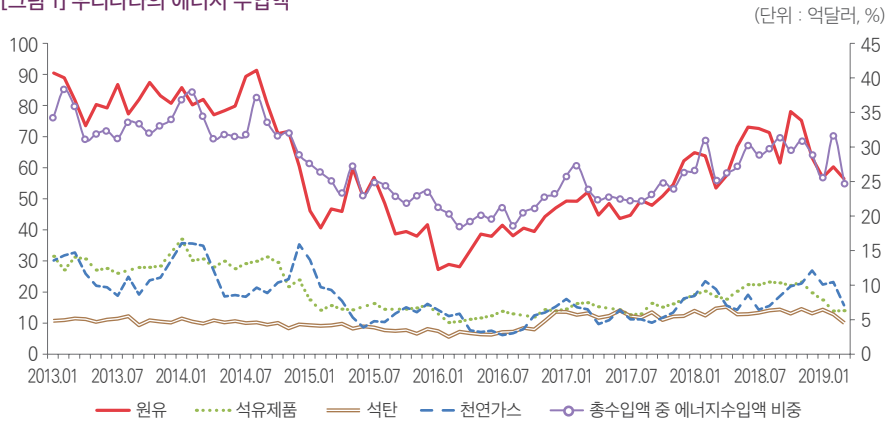
2019년 1/4분기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량은 8억 6,987만TOE※이고 에너지 수입액은 319억달러로 총 수입액 1,179억달러의 27.1%를 차지

- 2019년 1/4분기 에너지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3.5% 감소
 - 원유를 수입하여 석유로 정제하여 수출하는 물량을 제외한 순 국내 소비 에너지 수입량은 6억 9,057만TOE으로 전년동기대비 5.1% 감소
- 에너지수입액이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감소

※ TOE(Ton of Oil Equivalent 오일환산톤) : 에너지원별 원유 1톤 연소시 발생하는 에너지로 환산한 단위

2019년 1/4분기 에너지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

[그림 1]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



자료 : 국가에너지종합정보시스템

국제유가는 2018년 9월 평균가 76.7달러로 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에 있으며, 2019년 6월은 전년동월대비 17% 하락한 59.8달러

2019년 6월 국제 유가는 전년동월대비 17% 하락

- 다만,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2019년 하반기 국제 유가는 상반기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EIA 단기에너지전망, 2019)
- 국제 석탄 및 가스 가격도 2018년 대비 하락하였는데, 2019년 4~6월 석탄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7~37% 하락한 반면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2%에서 변동하여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음

[표 1] 국제 에너지 가격

(단위: 달러/배럴, 달러/톤, 달러/mmbtu)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석유	96.3	51.0	43.3	52.9	68.35	68.58	66.83	59.76
석탄	70.6	57.6	66.0	88.4	107.03	86.77	82.32	72.49
가스	16.0	10.9	7.4	8.6	10.65	10.27	9.91	9.91

주 : 석유는 브렌트/두바이/WTI의 평균, 석탄은 호주산, 가스는 일본도착 기준

자료: WorldBank Commodity Price data, 2019.6

2. 국내 에너지 수급 동향

2019년 1/4분기 1차에너지 공급량은 전년동기대비 8.5% 감소

- 2019년 1/4분기 에너지원별 공급량은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가 각각 12.3%와 18.6%, 8.8% 감소하였으며 원자력과 신재생은 각각 34.0%, 23.9% 증가
 - 원자력의 증가는 2018년 1/4분기의 기저효과에 기인하며 예년 평균 수준임
 - 에너지원별로 석유와 석탄의 비중이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
 - 에너지원별 비중은 석유(36.9%→32.8%), 석탄(28.3%→27.1%), 가스(21.8%→21.7%), 원자력(7.3→10.7), 신재생(5.3%→7.2%)
- ※ 1차 에너지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되는 에너지

[표 2]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공급량

(단위: 백만TOE,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p			
				1/4분기	비중	1/4분기	전년동기비	비중	
석탄	85	82	86.2	88.2	23	28.3	20	-12.3	27.1
석유	110	118	119.4	118.1	30	36.9	24	-18.6	32.8
천연가스	44	46	47.5	53.4	18	21.8	16	-8.8	21.7
수력	1	1	1.5	1.5		0.4		6.6	0.4
원자력	35	34	31.6	28.4	6	7.3	8	34.0	10.7
신재생	13	14	15.8	17.5	4	5.3	5	23.9	7.2
합계 (증가율)	288 (1.8)	295 (2.4)	302.1 (2.4)	307.3 (1.7)	813 (2.4)		74.4 (-8.5)		

주: 2019년 자료는 추정치(p).
자료: 에너지통계월보

2019년 1/4분기 1차 에너지 공급량과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모두 전년동기대비 감소

2019년 1/4분기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전년동기대비 9.1% 감소

- 2019년 1/4분기에는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43.2% 감소하였으며, 가정·상업부문도 5.9% 감소
 - 소비량 감소로 인해 수송부문의 비중은 17.9%에서 10%로 크게 감소
 -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수송부문의 감소로 산업부문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여 61.9%를 차지하며 가정·상업부문의 비중은 24.6%로 높아짐
 - 최종에너지원별 비중은 산업(61.5%→61.9%), 수송(17.9%→10.0%), 가정·상업(17.5%→24.6%), 공공(3.1%→3.5%)
- ※ 최종에너지는 1차에너지 중 소비자가 직접 에너지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의미

[표 3]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백만TOE,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p		전년동기비	비중	
					1/4분기	비중			
산업	136.7	138.5	144.3	146	36	61.5	36	-1.3	61.9
수송	40.3	42.7	42.8	43	10	17.9	6	-43.2	10.0
가정·상업	36.4	38.2	39.9	42	15	17.5	14	-5.9	24.6
공공	5.2	6.2	6.9	7	2	3.1	2	-2.7	3.5
최종에너지 (증가율)	218.6 (2.2)	225.5 (3.3)	233.9 (4.0)	238 (1.7)	64		58 (-9.1)		

주: 2019년 자료는 추정치(p).
자료: 에너지통계월보

3. 전력 수급 동향

2019년 상반기 전력공급예비율*은 18.3~22.0%, 설비예비율*은 44.0~68.9%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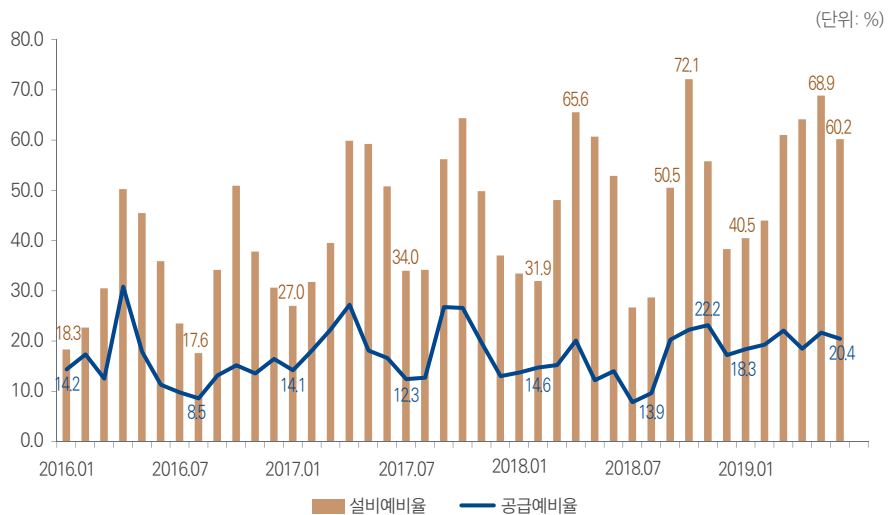
- 2019년 상반기 최대전력은 84,746MW(2019.1.4. 10:00am)이었으며, 설비예비율이 가장 높은 5월의 최대전력은 70,964MW로 연중 최대전력의 84%에서 등락
- 2019년 6월말 기준 발전설비량은 119GW로 역대 최대규모이며, 2010년 이후 연평균 5.8%씩 성장한 반면, 전력수요는 연평균 2.4%로 증가하여 발전설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음

* 설비예비율: 최대수요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발전설비율(%). (총발전설비-최대전력)/최대전력*100

* 공급예비율: 최대수요를 초과하여 공급가능한 발전설비율(%). (전력공급가능설비-최대전력)/최대전력*100

[그림 2] 전력수급 안정성

2019년 상반기 전력 수급은 안정적이며, 발전설비예비율은 44~69%로 높은 수준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

2019년 3~5월 발전량은 전년동기대비 0.5% 증가

- 2019년 3~5월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발전과 가스 발전, 양수발전이 감소하고 원자력과 신재생, 양수 발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22.3→31.7%), 석탄(40.4%→34.1%), 가스(29.4%→25.4%), 신재생(6.4%→7.3%) 등으로 나타남
- 원자력 발전량은 42,898GWh으로 전년동기대비 큰 폭(42.8%)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 동기간 예방점검 등으로 원전 가동율이 낮았던 기저효과에 기인

[표 4] 에너지원별 전력생산량

(단위: GWh,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p				
				3~5월	비중	3~5월	전년동기 대비	비중
원자력	161,995	148,427	133,505	30,034	22.3	42,898	42.8	31.7
석탄	213,803	238,799	238,984	54,375	40.4	46,190	-15.1	34.1
가스	121,018	122,943	152,924	39,572	29.4	34,351	-13.2	25.4
신재생	25,836	30,817	35,582	8,685	6.4	9,845	13.4	7.3
유류	14,001	8,358	5,740	1,141	0.8	1,280	12.2	0.9
양수	3,787	4,186	3,911	896	0.7	817	-8.8	0.6
합계 (증가율)	540,441 (2.3)	553,530 (2.4)	570,647 (3.1)	134,702 (2.0)		135,382 (0.5)		

자료: 전력통계속보(2019.5)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

2019년 3~5월 전력판매량은 12만 6,238GWh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

- 2019년 3~5월 전력판매량은 제조업 52.2%, 서비스업 26.9%, 가정부문 12.8%, 공공부문 4.6%로 전년동기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소 감소
- 2019년 3~5월 전력판매량은 전년대비 큰 차이가 없으며 모든 부문에서 고르게 증가
 - 농수산업의 전력판매량 비중은 3.2%로 타 부문 대비 크지 않으나 총 전력판매량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농업부문 전기화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

2019년 3~5월 전력 판매량은 서비스부문과 제조업부문의 낮은 증가량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0.6%에 그침

[표 5] 부문별 전력판매량

(단위: GWh,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5월	비중	3~5월	전년동기 대비	비중	
가정부문	66,173	66,517	70,687	15,887	12.7	16,168	1.8	12.8	
공공부문	22,908	23,605	24,569	5,655	4.5	5,768	2.0	4.6	
서비스부문	137,982	140,952	147,189	33,887	27.0	34,003	0.3	26.9	
생산 부문	농수산업	15,397	15,981	17,126	3,859	3.1	4,072	5.5	3.2
	광업	1,755	1,746	1,478	371	0.3	377	1.6	0.3
	제조업	252,824	258,945	265,100	65,840	52.5	65,850	0.3	52.2
계 (증가율)	497,039 (2.8)	507,746 (2.2)	526,149 (3.6)	125,500 (2.8)		126,238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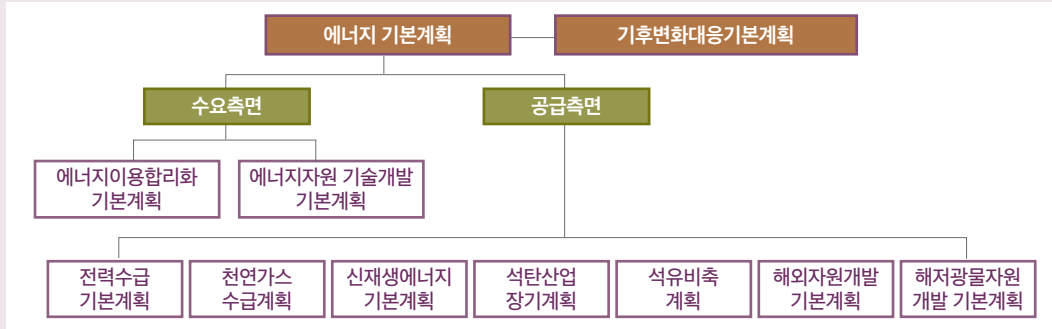
자료: 전력통계속보(2018.11)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에너지분야 계획은 5년마다 향후 20년을 계획하는 「에너지기본계획」과 2년마다 향후 15년을 계획하는 에너지원별 공급계획과 수요관리계획으로 구분

-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 2항에 따른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20년간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에너지원별 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실행계획에 해당
- 정부는 지난 6월4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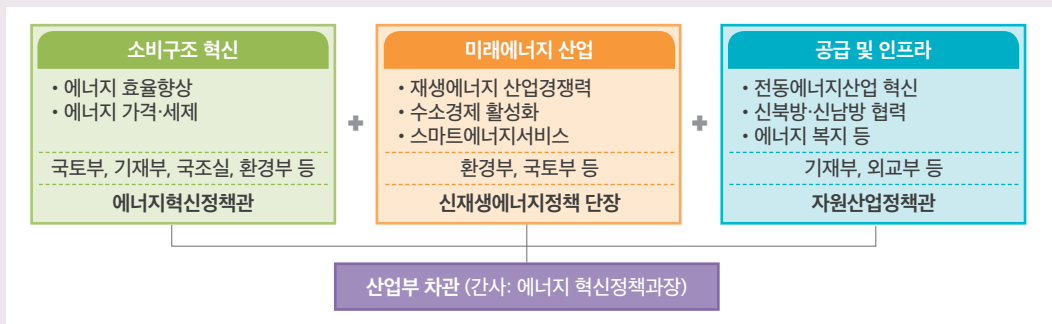
에너지관련 계획의 지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공급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수요부문에서는 소비효율 개선과 수요 감축을 주요 목표로 설정

- (공급부문)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를 목표,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으며, 신규 원전 건설은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 점진적으로 감축할 예정
- (소비구조) 2040년 기준시나리오 대비 에너지 수요를 18.6% 감축할 것으로 목표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가격 및 과세체계 재검토
- (에너지산업) 에너지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제도 개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이행추진 T/F 구성(안)



자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 6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및 수익률 국내외 비교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윤희호 경제분석관(788-4672)

국민연금기금은 장기 운용수익률 개선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채권 자산 비중을 줄이고 대체투자·해외자산 비중을 확대

- 보건복지부는 해외투자자산과 위험자산(주식+대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2020~2024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 마련

국민연금기금은 상대적으로 자산항목에서 채권 비중이 높고 자금운용의 변동성이 낮으며, 위험조정수익률이 양호한 반면 누적수익률 성과는 미흡

-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로, 자산배분 조정 필요성에 대한 관심 증가
 -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익률($\Delta 0.89\%$)을 기록, 누적수익률(3년~15년 평균)도 5.45% \rightarrow 3.64%로 점차 둔화되는 상황
 - 초과수익률 지표로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Delta 0.63\%$, 5개년 평균 $\Delta 0.04\%$ 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국내 다른 연기금과 공제회 기금에 비하여도 낮은 수준
- 국민연금은 비교 대상 연기금에 비추어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채권 비중(52.9%)이 높고 해외투자 비중(30.1%)은 낮은 편
 - 연기금별로 자산배분 추이를 보면,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대체투자자와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음
-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인 편임
 - 위험조정수익률(샤프 지수) 기준 국민연금기금 운용 성과는 비교 대상 연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 주요국 연기금의 자금운용(자산비중과 수익률)의 변동성을 분해하면, 국민연금의 운용 편차(4.28)는 비교 대상 연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됨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재정전망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배분 조정 전략 마련 필요

- 장기 재정추계와 현행 보험료율에 근거하여 장기 재정건전성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배분전략 수립을 고려할 필요
- 한편으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안전성도 고려될 수 있는 분산투자 전략 강구 필요

국민연금 기금 자산 배분 조정 현황

국민연금기금은 장기 운용수익률 개선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채권 자산 비중을 줄이고 대체 투자·해외자산 비중을 확대해 왔음

- 국민연금은 10년간(2009년~2018년) 채권 비중은 △24.7%p 줄인 반면, 주식, 대체투자, 해외 투자 비중은 각각 16.9%p, 7.5%p, 20.3%p 늘림
 -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란, 주식과 채권 외 부동산, 벤처기업, 인프라, 사모펀드, 헤지펀드,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함
- 타 연기금과 공제회도 채권 자산 비중을 줄이고 대체투자·해외자산을 늘이는 추세인데, 상대적으로 공제회가 자산조정(배분) 변화가 큰 편임
 - 비교 대상 기금인 4대 연기금 및 공제회 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입자의 노후보장 및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설치·운용 중인 공공성 있는 자금
 - 4대 연기금과 공제회 기금의 경우 자산 중 채권비중을 줄이고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동 중이며, 상대적으로 공제회가 자산 배분에 적극적인 편

[표 1] 최근 주요 공적연기금 또는 공제회 기금의 자산 규모·비중 및 변동 추이(2009~2018)

(단위: 억원, %, %p)

구분	4대 연기금				주요 공제회 기금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행정	교직원	군인	건설근로자	경찰	
자산규모 및 구성 (비중) (2018)	전체	6,382,168	77,833	10,377	164,814	109,198	262,097	76,075	37,027	25,745
	- 주식	2,218,442 (34.8)	26,161 (33.6)	1,310 (12.6)	65,605 (39.8)	18,602 (17.0)	38,248 (14.6)	12,966 (17.0)	4,623 (12.5)	1,390 (5.4)
	- 채권	3,375,529 (52.9)	36,518 (46.9)	4,725 (45.5)	68,276 (41.4)	13,859 (12.7)	75,352 (28.7)	12,821 (16.9)	22,526 (60.8)	10,233 (39.7)
	- 대체투자	766,498 (12.0)	15,154 (19.5)	139 (1.3)	28,291 (17.2)	70,926 (65.0)	148,497 (56.7)	50,288 (66.1)	7,290 (19.7)	12,482 (48.5)
	- 해외투자	1,919,391 (30.1)	13,690 (17.6)	917 (8.8)	44,421 (27.0)	50,129 (45.9)	110,172 (42.0)	25,317 (33.3)	7,286 (19.7)	9,644 (37.5)
2009 ~2018	주식	+16.9	+17.6	+11.5	+16.6	-4.5	-1.5	-	+12.5	+1.4
	채권	-24.7	-18.9	+31.9	-24.0	+7.2	-25.4	-	+0.8	-22.0
	대체투자	+7.5	+1.3	-26.7	+6.9	+16.2	+26.9	-	+3.7	+16.0
	해외투자	+20.3	+17.1	+3.7	+21.5	-	+39.4	-	+15.4	+37.5
2014 ~2018	주식	+4.8	-2.0	+3.5	+6.9	-16.3	-4.2	+1.6	+9.3	+0.3
	채권	-6.5	-2.1	+9.2	-10.6	+10.9	-11.6	+9.0	-8.7	-12.9
	대체투자	+2.1	+4.1	-3.0	+4.2	+9.9	+15.7	-10.6	+10.5	+6.4
	해외투자	+8.2	+10.4	+8.8	+17.3	-	+16.0	+18.7	+16.3	+23.9

- 주: 1. 자산은 투자자산(주식, 채권, 대체투자, 단기자금)과 회원대여 및 기타 유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에는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투자자산의 규모와 수익률만 비교(회원대여 및 기타자산 부문 제외)
2. 행정공제회의 경우 2010년~2018년까지의 자산배분 변동을 산출하였으며, 해외투자의 경우 2016년부터 배분 비중을 집계함에 따라 이전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3. 군인공제회의 경우 2013년부터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를 시행함에 따라 2009~2018년 자산배분 변동을 산출하지 않았음
4.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경찰공제회의 경우 2011년부터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를 시행함에 따라 2011년~2018년까지의 자산배분 변동을 산출
5.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2014년부터 주식자산(비중)을 보유하였음

자료: 각 공적 연기금 및 공제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는 「2019 기금평가」에서 2025년 이후 기금규모 1,000조원 시대에 부응하는 장기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¹⁾

- 장기 자산배분전략을 통해 매년 작성중인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을 보완
 - －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40년간 발생할 기금규모의 변동을 고려한 장기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청됨
- 2018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책임 투자 확대와 해외투자 등 투자 다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 －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독립성 부족, 전문인력 관리 미흡, 자산부채종합관리 선진화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보건복지부는 해외투자자산과 위험자산(주식+대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하는 「2020~2024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 마련

- 향후 투자 다변화를 지속 추진하여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데 집중할 것을 정책 기조로 제시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해외자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
 - － 국민연금기금은 대내외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해외자산 비중을 2018년 30.1%에서 2024년 5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

[표 2]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구분	2019년말		2020년말		2024년말
	금액(조원)	비중(%)	금액(조원)	비중(%)	비중(%)
주식	263.1	38.0	296.6	39.6	45% 내외
국내주식	124.6	18.0	129.7	17.3	15% 내외
해외주식	138.5	20.0	166.9	22.3	30% 내외
채권	341.4	49.3	354.4	47.4	40% 내외
국내채권	313.7	45.3	313.3	41.9	30% 내외
해외채권	27.7	4.0	41.2	5.5	10% 내외
대체투자	87.9	12.7	96.9	13.0	15% 내외
금융부문 계	692.4	100.0	747.9	100.0	100%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 2024년까지 해외투자 50% 수준으로 확대, 단기적으로 국내주식, 채권의 급격한 축소는 없어」, 2019. 5. 31.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및 연기금의 장기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 조정의 배경과 이에 따른 수익률 변화 효과를 검토할 필요

- 국내외 연기금과 공제회 기금의 수익률 등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
 - － 위험도를 고려한 수익률 및 초과수익률 분해 등 국내외 주요 연기금과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
- 이를 통해 대체투자 및 해외자산 등 위험자산 구성을 늘리는 방안 등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자산배분 조정안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년 기금평가 결과」, 2019. 5. 29.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 배분 조정 배경 및 국내 연기금·공제 회 기금 간 비교

가.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조정의 배경

2018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Delta 0.89\%$)²⁾로 집계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관심과 우려 증가

- 2018년에는 4대 연기금이 모두 $\Delta 2\%$ 전후의 손실을, 공제회는 4% 전후의 수익을 기록하여 상반된 실적을 기록
 - 한편, 자산별로 보면 주식 자산에서의 저조(-)한 수익률과 반대로, 대체투자 자산에서는 수익률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산배분 조정의 필요성 제기

[표 3] 2018년도 주요 공적 연기금 또는 공제회 기금 수익률 현황

(단위: %)

구분	4대 연기금				주요 공제회 기금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행정	교직원	군인	건설근로자	경찰
전체 수익률	$\Delta 0.89$	$\Delta 2.70$	$\Delta 2.18$	$\Delta 2.39$	4.0	4.10	3.81	0.27	4.49
- 주식	$\Delta 11.73$	$\Delta 14.82$	$\Delta 17.31$	$\Delta 14.40$	$\Delta 12.8$	$\Delta 16.03$	$\Delta 4.03$	$\Delta 16.14$	$\Delta 6.51$
- 채권	4.78	3.99	2.53	4.84	3.1	4.86	3.05	2.42	4.03
- 대체투자	12.05	8.10	$\Delta 49.50$	8.49	10.2	10.99	5.76	7.72	6.37
- (해외투자)	0.39	$\Delta 4.76$	$\Delta 6.94$	$\Delta 1.57$	3.9	6.09	3.19	2.71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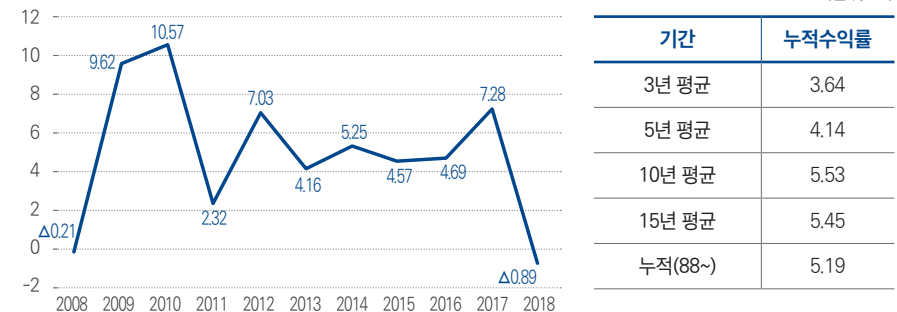
주: 1.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 기준. 다만, 교직원공제회는 평잔수익률(총손익(=실현손익+미실현손익) \div 운용평잔) 기준임
 2. 군인연금기금의 경우 2006년에 투자하여 부실화된 후 회수가 불가능한 대체투자 PEF3호의 상각(99억원)으로 인해 대체투자 수익률이 크게 하락함(PEF3호 미상각 시 군인연금기금의 전체 수익률은 -1.18%, 대체투자 수익률은 -2.71%)
 자료: 각 공적 연기금 및 공제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배분 조정 필요성 제고

- 2018년도 기금운용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포함하여도 최저 수준이며, 누적수익률(3년~15년 평균)도 5.45% \rightarrow 3.64%로 점차 둔화되는 상황

[그림 1] 국민연금 연간 및 누적 운용수익률 현황(2008~2018)

(단위: %)



주: 금융자산전체 수익률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복지사업(실버론 등) 등 비금융부문 투자를 포함할 경우 수익률은 $\Delta 0.91\%$

나. 국내 연기금·공제회 기금의 상대(초과)수익률 비교³⁾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와 비교하는 초과수익률 지표로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Delta 0.63\%$, 5개년 평균은 $\Delta 0.04\%$ 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타 연기금과 공제회 기금에 비하여도 낮은 수준

- 기금운용의 성과는 주로 해당 자산군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와 비교하여 평가하며, 이를 위해 초과수익률 개념을 활용
 - 초과수익률이란 해당 기금의 실제수익률에서 기준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차감한 값으로서 기금 여유자금 운용성과가 시장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우수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됨⁴⁾
 - 자금운용의 수익률은 당시 시장 상황에 민감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동종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 달성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운용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음
 - 기준수익률 또는 벤치마크(BM; benchmark) 수익률이란, 자산운용의 성과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수익률로서 주식의 경우 KOSPI·KOSPI200, 채권은 국고채금리, 해외주식은 MSCI 지수 등이 있음. 각 자산운용 담당자는 세부 자산군별로 대표 지수를 직접 또는 가중평균 등 조정(Customized)하여 벤치마크 지수와 수익률을 설정함
- 국민연금기금의 2018년도 초과수익률은 $\Delta 0.63\%$, 5개년(2014~2018) 평균 기준 초과수익률은 $\Delta 0.04\%$
 - 2018년도 초과수익률로 보면 운용 성과가 시장평균보다 부진하였으며, 비교 대상 연기금과 공제회 기금에 비하여도 낮은 수준
 - 2014년부터 5개년 평균을 보아도 $\Delta 0.04\%$ 로 군인연금기금 다음으로 낮으며 해당 기금과 함께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과를 보임
 - 초과수익률이 가장 낮은 군인연금기금($\Delta 1.18\%$)의 경우 2006년에 투자하여 부실화된 후 회수가 불가능한 대체투자 PEF3호가 상각(99억원) 처리되어 전체 수익률이 $\Delta 1.0\%$ p 하락(실현수익률 $\Delta 1.2\% \rightarrow \Delta 2.2\%$, 초과수익률 $\Delta 1.2\% \rightarrow \Delta 0.2\%$)한 점을 감안한다면, 2018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성과가 비교 대상 국내 연기금 및 공제회 기금 대비 제일 낮은 수준

3) 기획재정부 기금평가에서 국민연금기금평가를 국내가 아닌 해외 주요 연기금과의 비교로 전환되는 등 국내 연기금 및 공제회 기금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비교 대상을 해외 연기금으로 전환한 것은 기금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 전담운용조직, 스튜어디스 코드와 책임투자, 연금성기금에 대한 자산부채관리(ALM) 등 전반적인 부문을 평가하기 위해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해외 연기금과 비교를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운용성과로서의 자산배분 현황과 수익률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4) 국회예산정책처,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2015. 9. p. 16.

[표 4] 최근 주요 공적연기금 또는 공제회 기금의 초과수익률 현황(2014~2018)

(단위: %)

구성항목			2018			5개년 평균		
			실제	BM	초과	실제	BM	초과
기금	국민	전체	△0.89	△0.26	△0.63	4.14	4.18	△0.04
		- 주식	△11.73	△10.89	△0.85	3.17	3.49	0.32
		- 채권	4.78	4.71	0.06	3.64	3.64	0.00
		- 대체투자	12.05	11.28	0.77	10.25	7.99	2.26
	공무원	전체	△2.70	△2.39	△0.31	3.52	3.41	0.10
		- 주식	△14.82	△14.00	△0.82	2.63	3.07	△0.43
		- 채권	3.99	4.32	△0.33	3.24	3.24	0.00
		- 대체투자	8.10	4.73	3.37	7.35	4.84	2.51
	군인	전체	△2.18	△1.00	△1.18	1.17	1.57	△0.40
		- 주식	△17.31	△17.36	0.05	1.71	1.31	0.39
		- 채권	2.53	2.57	△0.04	2.37	2.34	0.03
		- 대체투자	△49.50	△0.89	△48.61	△14.69	5.06	△19.75
사학	전체	△2.39	△2.31	△0.08	3.43	3.31	0.12	
	- 주식	△14.40	△12.87	△1.53	1.70	2.91	△1.21	
	- 채권	4.84	4.21	0.63	3.94	3.45	0.49	
	- 대체투자	8.49	7.15	1.34	6.64	4.82	1.82	
공제회 기금	행정	전체	4.01	△1.06	5.07	7.46	3.44	4.02
		- 주식	△12.79	△15.84	3.05	6.16	2.93	3.23
		- 채권	3.09	2.22	0.87	3.60	2.63	0.97
		- 대체투자	10.15	3.40	6.75	7.73	3.40	4.33
	교직원	전체	4.10	0.25	3.85	5.48	3.45	2.03
		- 주식	△16.03	△15.44	△0.59	1.79	1.54	0.25
		- 채권	4.86	4.46	0.40	4.46	3.69	0.77
		- 대체투자	10.99	3.55	7.45	7.76	4.15	3.61
	군인	전체	3.81	△3.46	7.27	2.84	△3.46	6.30
		- 주식	△4.03	△19.00	14.97	2.30	△19.00	21.30
		- 채권	3.05	3.78	-0.73	4.70	3.78	0.92
		- 대체투자	5.76	△1.28	7.04	2.58	△1.28	3.86
건설 근로자	전체	0.27	△0.14	0.41	2.63	2.15	0.48	
	- 주식	△16.14	△16.12	△0.02	1.27	1.07	0.20	
	- 채권	2.42	3.04	△0.62	2.57	2.46	0.11	
	- 대체투자	7.72	4.35	3.37	6.25	4.38	1.87	
경찰	전체	4.49	1.32	3.17	5.23	2.47	2.75	
	- 주식	△6.51	△17.28	10.77	2.18	1.09	1.09	
	- 채권	4.03	1.34	2.69	3.74	0.93	2.81	
	- 대체투자	6.37	3.53	2.84	7.39	4.21	3.18	

주: 1. 전체 수익률은 주식, 채권 외 단기자금 등 금융자산 전체 수익률이고, 자산구성별로는 주식, 채권, 대체투자 자산만 따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음

2. 5개년 평균값은 각 연도별 운용수익률, 벤치마크(BM) 수익률과 초과수익률의 산술평균값임

3. 행정공제회 기금의 경우 2016년 이전까지 벤치마크지수 설정하지 않아 초과수익률 값이 없는 관계로, 2017년과 2018년 2개 연도 평균을 계산함

4. 군인공제회 기금의 경우 2017년 이전까지 벤치마크지수 설정하지 않아 초과수익률 값이 없는 관계로 2018년도 기준으로 계산함

5. 초과수익률의 개념과 구성 요인은 [BOX 2] 참조

자료: 각 연기금 및 공제회 기금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국내 연기금·공제회 기금과의 위험조정수익률 비교

국민연금기금의 최근 5년 동안의 위험조정수익률(샤프 지수; Sharpe ratio)⁵⁾⁶⁾는 0.72로서, 다른 연기금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공제회보다는 대체로 낮은 값

-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연기금과 공제회는 자금 수익률 극대화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노후와 복리후생 보장을 위하여 안정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자금운용을 고려하여야 함
 - － 이에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의 수익률을 단순히 비교하기보다 위험도를 고려할 필요 있음
- 단위위험에 대한 초과수익률을 나타내는 정도를 측정하는 샤프 지수(Sharpe Ratio)를 활용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조정수익률을 계산하면 0.72임
 - － 이는 공무원(0.37), 군인(△0.41), 사학(0.34) 등 연기금 보다는 높으나, 행정(1.28), 교직원(2.64), 군인(1.47), 경찰(2.43) 등 공제회 보다는 낮은 수치임
- 즉, 위험도를 고려하더라도 국민연금 수익성 결과가 타 공제회 기금보다 높지 않음
 - － 자산 구성별로 보면, 대체투자>채권>주식 순으로 나타나 대체투자가 위험조정수익률이 제일 높고 주식은 제일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표 5] 공적연기금 또는 공제회 기금의 샤프 지수(Sharpe ratio)(2014~2018)

구분	4대 연기금				주요 공제회 기금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행정	교직원	군인	건설근로자	경찰
전체	0.72	0.37	△0.41	0.34	1.28	2.64	1.47	0.44	2.43
- 주식	0.11	0.00	△0.07	△0.07	0.12	△0.01	0.40	△0.04	0.03
- 채권	0.67	0.71	0.33	1.00	0.50	1.93	1.49	0.60	1.16
- 대체투자	2.51	1.77	△0.93	3.16	2.50	2.74	0.26	3.20	2.17

주: 연기금 및 공제회마다 샤프 지수의 산출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위험수익률은 3년 만기 국채금리로, 변동성은 연간 운용수익률의 표준편차 값으로 표준화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각 연기금 및 공제회 기금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내 연기금 및 공제회 기금의 위험조정수익률(샤프 지수) 산출 방식]

- 최근 5년간 샤프 지수(Sharpe ratio) = (해당 기간 동안의 연평균 운용수익률 - 무위험수익률) ÷ (연간 운용수익률의 표준편차)

※ 연평균운용수익률은 5년간 운용수익률을 기하평균하여 산출하였으며, 무위험수익률은 “3년 만기 한국 국채 금리”를 기하평균하여 산출(2014~2018년까지 1.95%)

5) 자산운용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초과수익률 뿐만 아니라, 해당자산의 위험수준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위험을 고려한 성과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가 “샤프 지수”이다. 샤프 지수란 단위 위험에 대한 초과수익률(실현수익률 - 무위험수익률)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동일한 위험수준을 전제했을 때 무위험수익률 대비 실현수익률의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샤프 지수를 통하여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성과를 동일선상에서 함께 비교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2015. 9. p. 57.)

6) Sharpe, W. 1994. “The Sharpe Ratio,”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 vol.21, no.1, (Fall): p.49-58.

라. 국내 연기금·공제회 기금과의 자산배분효과 비교

초과수익률의 요인을 분해하면 5개년 평균 자산배분효과는 $\Delta 0.04\%$, 종목선택효과는 0.14% 이며, 2018년의 경우는 두 효과 모두에서 음(-)의 값을 기록

- 국민연금기금의 5개년 평균 초과수익률 0.10% 중 자산배분효과는 $\Delta 0.04\%$, 종목선택효과는 0.14% 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기금운용 담당자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설정한 자산배분의 성과가 미흡하였음을 의미
- 2018년에는 두 효과 모두 음(-)의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기금운용 담당자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역의 성과도 부진하였음을 의미

[표 6] 최근 주요 공적연기금 또는 공제회 기금의 초과수익률 분해(2014~2018)

(단위: %)

구성항목		2018			5개년 평균		
		초과	자산배분	종목선택	초과	자산배분	종목선택
기금	국민	$\Delta 0.68$	$\Delta 0.46$	$\Delta 0.22$	0.10	$\Delta 0.04$	0.14
	공무원	$\Delta 0.31$	0.00	$\Delta 0.31$	0.10	0.00	0.10
	군인	$\Delta 1.18$	0.10	$\Delta 1.28$	$\Delta 0.40$	$\Delta 0.06$	$\Delta 0.34$
	사학	$\Delta 0.08$	0.08	$\Delta 0.16$	0.12	0.08	0.05
공제회 기금	행정	5.07	1.38	3.69	4.02	0.66	3.37
	교직원	4.66	0.41	4.25	2.34	0.02	2.14
	군인	7.27	0.09	7.18	6.30	0.09	6.21
	건설근로자	0.41	0.13	0.28	0.48	0.02	0.46
	경찰	3.17	$\Delta 0.16$	3.33	2.75	$\Delta 0.05$	2.81

- 주. 1. 5개년 평균값은 각 연도별 초과수익률, 자산배분효과와 종목선택효과의 산술평균값임
 2.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자체 초과수익률 산출 방식과 [BOX 2]에 따른 요인분해 산출 방식의 차이로 [표 4]의 2018년도 초과수익률 값($\Delta 0.63\%$)과 차이가 있음
 3. 교직원공제회 기금의 경우 별도의 초과수익률 분해를 계산하지 않는 관계로 직접 산출하였으며, 단기자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관계로 앞의 표에 따른 초과수익률 값과 다소 차이가 존재함
 4. 행정공제회 기금의 경우 2016년 이전까지 벤치마크지수 설정하지 않아 초과수익률 값이 없는 관계로, 2017년과 2018년 2개 연도 평균을 계산함
 5. 군인공제회 기금의 경우 2017년 이전까지 벤치마크지수 설정하지 않아 초과수익률 값이 없는 관계로 2018년도 기준으로 계산함
 6. 초과수익률의 개념과 구성 요인은 [BOX 2] 참조

자료: 각 연기금 및 공제회 기금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국민연금기금은 그 규모의 특성상 시장의 가격형성과 민간 투자 행동 왜곡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해외 연기금과의 비교도 실시할 필요⁷⁾

- 예를 들면, 국민연금기금은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자산배분 조정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적시에 자산배분 조정을 실시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자산배분효과가 음(-)이 될 수 있음

7) 기획재정부 기금평가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미국 캘퍼스 등)과 비교 평가(2016 회계연도 평가부터 시작)

초과수익률의 개념 및 구성 요인

초과수익률이란, 기금의 실현수익률에서 기금의 기준수익률을 차감한 값으로서,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 초과수익률은 “자산배분효과”와 “종목선택효과”의 합으로 분해되며,⁸⁾ 각각 초과수익률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요인이 됨
- 자산배분효과는 동일한 기준수익률(rb) 하에서 자산배분의 변동(wp-wb)이 미친 효과를 의미($\sum rb(wp-wb)$)
- 종목선택효과는 동일한 자산배분(wp) 하에서 실현수익률과 기준수익률의 차이(rp-rb), 즉 상품운용의 성과를 의미($\sum (rp-rb)w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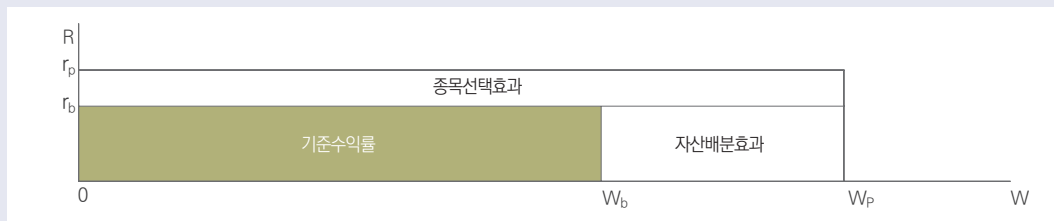
$$\begin{aligned}
 \text{초과수익률} &= (\text{기금의 실현수익률}) - (\text{기금의 기준수익률}) \\
 &= rpwp - \sum rbwb \\
 &= \sum rb(wp-wb) + (rp-rb)wp \\
 &= (\text{자산배분효과}) + (\text{종목선택효과})
 \end{aligned}$$

※ rp: 실현수익률, rb: 기준수익률(벤치마크수익률), wp: 실제 자산배분내역(연중 운용평잔)
wb: 연초에 수립한 자산배분계획 비중(벤치마크 포트폴리오)

자료: Carl Bacon, Practical portfolio performance measurement and attribution, 2008.

기금의 운용과정에서는 통상 기금운용 담당자와 운용역(매니저)의 2가지 의사결정주체가 존재하며, 이들의 역할에 따른 성과가 초과수익률의 요인분해에 대응되는 것임

- 기금운용 담당자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자산배분비율을 조정하는 전술적 자산배분을 실시하며, 이의 성과가 자산배분효과에 반영
- 운용역(매니저)은 기금운용 담당자가 정해진 자산배분안 내에서 상품(국채, 회사채, MBS 등)을 매매·운용 하는데, 적절한 매매 타이밍에 수익률 제고에 기여했는지의 성과가 종목선택효과에 반영됨.
운용역은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연기금투자플, 개별 위탁기관 등의 금융전문인력을 의미하며,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담당자가 될 수도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2015. 9, p. 51-52.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8) 초과수익률 분해는 Brinson et al.(1986)의 Performance attribution 모델을 따른 것으로, “자산배분효과”와 “복합효과”를 포함하는 “종목 선택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복합효과”는 다른 두 효과의 결합효과를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2015. 9, p. 53).

주요국 연기 금과의 수익 률 및 자산 배분 비교

가. 주요국 연기금과의 누적수익률 비교

2018년 주요국 연기금 운용수익률은 대부분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익률($\Delta 0.89\%$)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 조사 대상 연기금의 운용수익률이 CPPIB(캐나다, 8.4%)를 제외하고는 $\Delta 0.9\%$ (NPS, 대한민국)부터 $\Delta 7.7\%$ (GPIF, 일본)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표 7] 2018년도 주요국 연기금 운용수익률 현황

(단위: %)

기금명 (국가)	NPS (대한민국)	GPIF (일본)	CalPERS (미 캘리포니아)	CPPIB (캐나다)	ABP (네덜란드)	GPIF (노르웨이)
운용수익률	$\Delta 0.9$	$\Delta 7.7$	$\Delta 3.5$	8.4	$\Delta 2.3$	$\Delta 6.1$

주: 회계연도(FY)가 12월말이 아닌 연기금(GPIF: CPPIB: 3월말, CalPERS: 6월말)의 경우 시간가중에 따라 수익률 대상기간을 1.1~12.31로 가정하여 추정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누적수익률로 비교하면, 국민연금기금은 일본(GPIF)를 제외한 비교 대상 연기금보다 누적수익률이 대체로 낮아 수익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

- 2018년 운용수익률 $\Delta 0.9\%$ 만 보면 주요국 연기금 수익률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최근 5년(4.14%), 10년(5.53%), 15년(5.45%)의 누적 수익률에서는 일본 연기금(GPIF) 다음으로 대체로 낮은 누적 수익률을 기록
 - 특히, GPIF는 부과식 연기금 운용 방식이고, 시장평균수준의 수익률 달성 전략을 취하는 위험회피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수익 극대화과 거리가 있는 기금운용방식인 점을 고려하면, 비교 대상 연기금 중 수익극대화 목표 달성에 가장 미흡한 성과로 판단
- 15년의 기간 동안 국민연금기금의 누적 성과가 해외 연기금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을 의미

[표 8] 주요국 연기금 누적 운용수익률 현황

(단위: %)

기금명 (국가)	한국 (NPS)	일본 (GPIF)	미국 (CalPERS)	캐나다 (CPPIB)	네덜란드 (ABP)	노르웨이 (GPIF)
5년(2014~2018)	4.14	5.80	10.24	12.20	6.24	4.75
10년(2009~2018)	5.53	4.04	4.95	8.12	8.70	8.33
15년(2004~2018)	5.45	3.91	7.43	8.96	6.65	5.78

주: 1. 회계연도 마감일 3.31인 GPIF와 CPPIB는 2003.4월부터 2018.3월까지, 회계연도 마감일 6.30인 CalPERS는 2003.7월부터 2018.6월까지의 누적 수익률을 산정하였음

2. 각 연기금별 회계연도(FY) 기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은 시간가중 수익률을 기준으로 함

자료: 각 연기금 연차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국 연기금과의 위험조정수익률 비교

위험도를 고려한 수익성과(샤프 지수)를 고려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 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샤프 지수(Sharpe Ratio)를 활용하여 비교하면, 국민연금(NPS)는 5년 1.06, 10년 1.47, 15년 1.22로 주요국 연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됨

[표 9] 주요국 연기금 샤프 지수(Sharpe Ratio) 현황

(단위: %)

기금명 (국가)	한국 (NPS)	일본 (GPIF)	미국 (CalPERS)	캐나다 (CPPIB)	네덜란드 (ABP)	노르웨이 (GPF)
5년(2014~2018)	1.06	0.82	1.42	1.95	0.83	0.52
10년(2009~2018)	1.47	0.54	0.32	0.72	1.21	0.84
15년(2004~2018)	1.22	0.41	0.51	0.80	0.54	0.38

주: 1. 회계연도 마감일 3.31.인 GPIF와 CPPIB는 2003.4월부터 2018.3월까지, 회계연도 마감일 6.30.인 CalPERS는 2003.7월부터 2018.6월까지의 누적 수익률을 산정하였음

2. 무위험수익률은 1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시간 가중하여 계산하였고(5년 0.91%, 10년 0.58%, 15년 1.50%), 변동성은 주요국 연평균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활용

자료: 각 연기금 연차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민연금기금의 누적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샤프 지수가 높게 산출된 것은, 해당 기간 동안 수익률의 변동성이 비교 대상 연기금에 비해 낮았기 때문

- 국민연금기금이 안전자산 투자, 위험헷지(Hedge), 분산투자 등으로 해당 기간 동안 수익률을 비교 대상 연기금보다 일정하게 유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표 10] 주요국 연기금 수익률 변동성 현황

(단위: %)

기금명 (국가)	한국 (NPS)	일본 (GPIF)	미국 (CalPERS)	캐나다 (CPPIB)	네덜란드 (ABP)	노르웨이 (GPF)
5년(2014~2018)	3.036	5.987	6.553	5.779	6.443	7.316
10년(2009~2018)	3.375	6.423	13.441	10.538	6.732	9.265
15년(2004~2018)	3.251	5.932	11.719	9.322	9.463	11.157

주: 변동성은 주요국 연평균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계산

자료: 각 연기금 연차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외 연기금의 위험조정수익률(샤프 지수) 산출 방식]

- 최근 5년간~15년간 샤프 지수 = (해당 기간 동안의 연평균운용수익률 - 무위험수익률) ÷ (연간 운용수익률의 표준편차)

※ 연평균운용수익률은 비교 대상 기간 동안의 운용수익률을 기하평균하여 산출하였으며, 무위험수익률은 "1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를 기하평균하여 산출 (5년 0.91%, 10년 0.58%, 15년 1.50%)

다. 주요국 연기금의 자산배분 조정 추이

국가별 공적 연기금의 운용규모는 300조~1,600조원(한국통화 기준)이며,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차이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비교 대상 연기금에 비해 채권 비중이 높고 해외투자 비중은 낮은 편에 속함

- 미국(CalPERS), 캐나다(CPPIB), 노르웨이(GPFG)는 자산 구성항목 중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우리나라(NPS)는 채권비중(52.9%)이 높게 형성
 - 해외투자자산 비중은 30.1%로 비교 대상 연기금에 비해 낮은 편

[표 11] 주요국 연기금의 자산배분 현황(2018년)

(단위: 현지 통화, %)

기금명	한국 (NPS)	일본 (GPIF)	미국 (CalPERS)	캐나다 (CPPIB)	네덜란드 (ABP)	노르웨이 (GPFG)
전체 자산규모	638,219 (₩,billions)	150,361 (¥,billions)	357,990 (USD,millions)	356,322 (CAD,millions)	399 (€,billions)	8,256 (kr,billions)
(원화환산 ₩,billions)	638,219	1,645,130	427,798	325,766	531,947	1,129,586
- 주식	221,875 (34.8)	72,681 (48.0)	202,622 (56.6)	210,586 (59.1)	133 (33.3)	5,477 (66.3)
- 채권	337,580 (52.9)	69,028 (45.6)	80,548 (22.5)	76,966 (21.6)	160 (40.2)	2,533 (30.7)
- 대체투자	76,620 (12.0)	-	38,663 (10.8)	83,736 (23.5)	109 (27.2)	246 (3.0)
- 기타	2,143 (0.3)	9,652 (6.4)	36,157 (10.1)	-14,966 (-4.2)	-	-
대체투자 비중	12.0	(0.21)	10.8	23.5	27.2	3.0
해외투자 비중	30.1	41.7	26.8	84.9	-	(100.0)
(시점)	2018.4/4	2018.4/4	2018.2/4	2018.1/4	2018.4/4	2018.4/4

- 주: 1. 일본의 경우 대체투자의 규모와 수익은 주식·채권별 각 자산군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산계획(Policy Asset Mix)상 비중은 0.21%로서 미미한 수준
 2. 미국의 경우 부동산은 대체투자로, 그 밖에 유동성(liquidity)과 인플레이션 자산(inflation asset) 등은 기타자산으로 분류
 3. 캐나다의 경우 확정이자부(Fixed income)와 투자채권(Investment receivables)을 채권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 현금 및 절대 수익률 전략(Cash and Absolute Return Strategies)에 따른 순금융 비용(파생 상품 및 환매 조건 협상)과 대외 순채무(-) 부문은 기타자산으로 분류하였음
 4. 네덜란드의 경우 부동산 투자를 대체투자에 분류하였으며, 인플레이션 및 환율헷지에 따른 오버레이(Overlay) 비중 -0.7% 비포함. 또한, ABP는 벨기에(€ 6 billion)와 독일(€ 20 billion) 등 해외 투자 자산이 존재하나, 유로존 국가내 투자임을 고려하여 해외투자 비중으로 표시하지 않음
 5. 노르웨이 GPFG는 전액 국외 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6. 각 연기금별 연차보고서에서 자산비중만 공시한 경우에는 비중을 토대로 자산규모를 산출하였음
 7. 원화환산금액의 환율은 2019.5.29.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였음

자료: 각 연기금 연말 공표통계자료 및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기금별로 자산배분 추이를 보면,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대체투자와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채권 위주의 안전자산에서 벗어나 위험관리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고자 분산투자 전략을 실시하며, 협소한 국내 자산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 투자 다변화를 시도하는데 따른 것
 - 대표적으로 일본(GPIF)의 경우, 지속적 디플레이션 현상에 대처하고자 국내채권 비중을 줄이고, 국내주식과 해외부문(주식, 채권)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중기자산계획(제3차, 2015.4~2020.3)을 수립

[표 12] 일본 중기자산계획 변경내용

구분	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채권	해외주식	단기자산
목표자산배분	60%	12%	11%	12%	5%
변동허용폭	±8%	±6%	±5%	±5%	-

구분	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채권	해외주식
목표자산배분	35%	25%	15%	25%
변동허용폭	±10%	±9%	±4%	±8%

주: 1. 대체투자는 최대 5% 이내로 투자함. 인프라, 사모주식, 부동산, 그 외 자산들은 위험-수익 프로파일에 따라 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채권, 해외주식으로 분류됨

2. GPIF는 각 자산별로 허용변동 범위를 가지는 전략적 자산배분을 따름

자료: GPIF 연차보고서(2015)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해외 연기금의 기금관련 주요현황」, 2015, p. 19.

- 해당 기간(2009~2018년) 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비중 변화 폭이 일본(GPIF) 다음으로 큰 편이나, 주요국 연기금에 비교할 때 채권자산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
 - NPS의 채권자산 비중은 2008년 81.3%에서 2018년 52.9%로, 이 중 국내채권 비중은 77.4%에서 48.7%로 감소하였으나, 동 비중은 10년 전 GPFG(노르웨이, 50.4%), ABP(네덜란드, 44.8%), CalPERS(캘리포니아주, 25.3%), CPPIB(캐나다, 24.3%)에 비하여 높은 편
 - 향후 주요국 연기금의 자산배분 변동 추세에 따른 경우 국민연금의 주식, 대체투자 비중은 늘고 채권 비중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13] 주요국 연기금의 자산배분 비중 변동 추이

(단위: %p)

회계연도 기간		한국 (NPS)	일본 (GPIF)	미국 (CalPERS)	캐나다 (CPPIB)	네덜란드 (ABP)	노르웨이 (GPFG)
2009 ~2018	주식	+16.9	+26.9	+4.9	-3.6	+0.9	+4.0
	채권	-24.7	-35.4	-2.8	-2.7	-4.6	-7.0
	대체투자	+7.5	-	+0.7	+15.7	+4.4	+3.0
	해외투자	+20.3	+18.0	+4.6	+37.9	-	-
2014 ~2018	주식	+4.8	+17.0	-7.0	+9.1	-1.4	+5.0
	채권	-6.5	-24.2	+6.9	-11.5	+0.9	-5.8
	대체투자	+2.1	-	+0.8	+6.6	+2.6	+2.2
	해외투자	+8.2	+12.0	-4.0	+21.6	-	-

주: 일본(GPIF)는 FY2008~2017과 FY2013~2017, 미국(CalPERS)는 FY07-08~FY17-18과 FY13-14~FY17-18, 네덜란드 (ABP)는 FY08~18, FY14~18 기준으로 작성

자료: 각 연기금별 연차보고서 자료 및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평가」, 2019. 1. 31.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라. 주요국 연기금의 자산배분조정 효과 분해 및 비교

주요국 연기금의 수익률 변화를 분해하면, 국민연금 수익률 변화의 편차(4.28)는 비교 대상 연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됨

- 국민연금의 5년간 자금운용의 변동성을 분해하면 평균은 $\Delta 0.94$ (비중조정 0.15, 수익률변화 $\Delta 1.16$), 편차는 4.28(비중조정 0.19, 수익률변화 4.15)
 - 비교 대상 연기금에 대하여 편차가 낮은 수준으로, 특히 수익률 변화의 편차가 낮게 나타남
 - 이는 분석 대상 기간의 수익률 변동성이 낮아 자산운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이 있음을 보여줌

[표 14] 주요국 연기금 자산배분과 수익률의 변동성 현황(2014~2018)

구분	평균				편차			
	비중조정	수익률변화	교차	합	비중조정	수익률변화	교차	합
국민연금	0.15	$\Delta 1.16$	0.06	$\Delta 0.94$	0.19	4.15	0.24	4.28
GPIF	1.06	$\Delta 1.32$	$\Delta 0.40$	$\Delta 0.66$	1.12	9.16	1.35	9.92
CalPERS	0.13	$\Delta 0.94$	$\Delta 0.10$	$\Delta 0.92$	0.30	11.04	0.34	11.05
CPPIB	0.11	$\Delta 0.25$	0.15	0.02	0.11	9.33	0.47	9.50
ABP	0.05	$\Delta 1.40$	0.03	$\Delta 1.33$	0.11	7.05	0.11	7.04
GPFG	0.11	$\Delta 4.51$	$\Delta 0.04$	$\Delta 4.44$	0.09	10.50	0.25	10.65

- 주: 1. 국민연금은 2013~2018회계연도(2018. 12. 31.)까지의 자산배분과 수익률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자산구성 중 단기자금(2018년 기준 전체 대비 0.3%)을 제외한 규모를 전체 비중으로 가정하였음
2. GPIF는 2012~2017회계연도(2018. 3. 31.)까지의 자산배분과 수익률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자산구성 중 단기자금(2018년 기준 전체 대비 8.8%)을 제외한 규모를 전체 비중으로 가정하였음
3. CalPERS는 2013~2018회계연도(2018. 6. 30.)까지의 자산배분과 수익률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자산구성 중 유동성자산(2018년 기준 전체 대비 4.0%), 인플레이션자산(6.8%), 기타자산(0.7%)을 제외한 규모를 전체 비중으로 가정하였음
4. CPPIB는 2013~2018회계연도(2018. 3. 31.)까지의 자산배분과 수익률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자산구성 중 단기자산과 대외순채무 부문(2018년 기준 전체 대비 -8.9%)을 제외한 규모를 전체 비중으로 가정하였음
5. ABP는 2013~2018회계연도(2018. 12. 31.)까지의 자산배분과 수익률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자산구성 중 인플레이션 및 환율헤지에 따른 오버레이(Overlay)(2018년 기준 전체 대비 0.5%) 부분을 제외한 규모를 전체 비중으로 가정하였음
6. GPFG는 2013~2018회계연도(2018. 12. 31.)까지의 자산배분과 수익률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자산구성 중 순채무부문(2018년 기준 전체 대비 -1.2%)을 제외한 규모를 전체 비중으로 가정하였음

자료: 각 연기금 연말 공표통계자료 및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함

자금운용의 수익률 분해 방식

각 자산별 수익률과 포트폴리오의 연도별 변화에 따른 전체 수익률 변화를 분해한 방법

— 해당 수익률 분해는 자산운용의 전반적인 변동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해당 자산운용과 수익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음

자금운용의 변동성 분해는 구체적으로 다음 수식에 따라 작성

전체 효과 = 비중조정 효과 + 수익률변화 효과 + 교차효과

- 전체 효과 : $w_t \times r_t - w_{t-1} \times r_{t-1}$
- 비중조정 효과 : $(w_t - w_{t-1}) \times r_{t-1}$
- 수익률변화 효과 : $w_{t-1} \times (r_t - r_{t-1})$
- 교차 효과 : $(w_t - w_{t-1}) \times (r_t - r_{t-1})$

※ w_t, w_{t-1} : t기와 (t-1)의 개별 자산 비중(%)
 r_t, r_{t-1} : t기와 (t-1)의 개별 자산별 수익률(%)

평균값은 5년 동안의 비중조정, 수익률변화, 교차 효과의 산술평균을 계산한 값이며, 편차는 같은 기간 동안의 개별 자산비중 조정 규모와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냄

- ④ 비중조정 효과는 전년도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산비중 변화를 계산한 값
 - 전체 값이 양(+)의 값이면 자산비중 조정이 수익률에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판단 가능
- ⑤ 수익률 변화 효과는 전년도 자산비중을 기준으로 수익률 변화를 계산한 값
 - 전체 값이 음(-)의 값이면 전반적인 수익률 둔화 현상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 가능
- ⑥ 교차 효과는 비중조정 효과와 수익률변화 효과에 따른 잔차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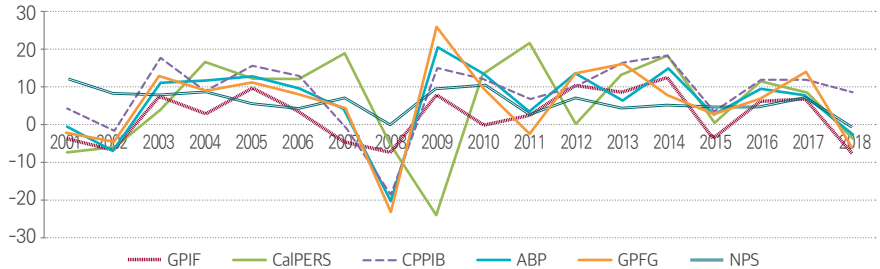
마.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 조정 시 고려사항

비교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조정수익률이 높았던 것은 안정적·보수적인 방향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 2018년 주요국 기금운용 성과는 2008~2010년의 금융위기 이후 저조한 실적을 나타낸 가운데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음
 - 2018년에는 S&P 지수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하락세를 겪었으며, 특히 2017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상반되어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졌음

[그림 2] 주요국 연기금의 수익률 추이(2001~2018년)

(단위: %)



주: 2001년부터 2017년까지는 각 연기금별 회계연도(FY)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2018년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시간가중 수익률로 표시하였음

자료: 각 연기금별 연차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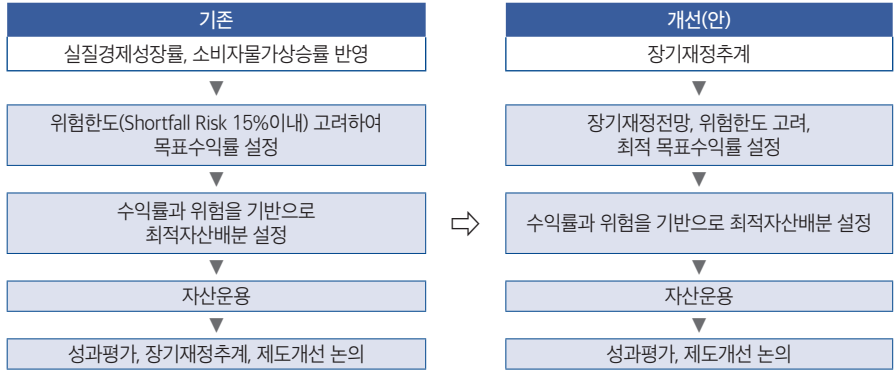
- 다만, 분석 대상 기간인 2004년~2018년의 전반적인 수익률로 보면, 주요국 연기금에 비하여 수익률 제고에는 미흡하였다는 평가
 - 분석 대상 기간 동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과 최근 경기 침체 국면은 있었으나,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가 대세적인 상승 시기였음
 - 이에 해당 기간 동안의 비교 대상 연기금에서는 채권보다 주식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대체투자와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등 위험과 수익률이 높은 자산 위주의 배분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2008년 전후의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보다 높은 누적 수익률을 기록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배분 조정 전략 마련 필요

- 채권 위주의 자산배분에서 대체·해외투자자산으로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중기자산배분(안)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이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홈 바이어스(Home Bias; 국내자산 편중)의 부작용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장기 재정추계와 현행 보험료율에 근거하여 장기 재정건전성에 대응할 수 있는 목표 수익률 설정을 고려할 필요
 - 현행 국민연금의 목표수익률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실질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조정치를 반영하여 설정되고 있는데,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되는 시기에는 수익률 목표치가 하향 조정되어 기금소진시기를 오히려 단축시킬 우려가 있음⁹⁾
 - 결국, 사회보험기금의 운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적 자금 운용과 장기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수익률 설정을 고려할 필요 있음

9)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은 기금고갈이 이미 예고된 바와 같고, 제도(보험료율, 수급연령 등)의 개선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기금 고갈 시점까지 asset only 방식으로 자산배분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표 15] 목표수익률 설정(안)



- 한편으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안전성도 고려될 수 있는 분산투자 전략 강구 필요
 - 2019년 이후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경기 상승 시기에 효과적이었던 위험자산 비중 확대가 수익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 연도별 국민연금기금 자산별 수익률을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내채권(10.6%), 2009년은 국내주식(51.0%)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고, 2016년은 해외주식(10.6%), 2017년은 국내주식(25.9%), 2018년은 대체투자(7.6%)의 수익률이 높아 채권과 주식의 수익 기여도가 매년 상이함
 - 결국, 해외 및 대체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저평가 자산을 발굴·투자할 수 있는 운용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¹⁰⁾

[표 16] 국민연금의 자산별 수익률 현황

(단위: %)

구분	1997	1998	2000	2001	2008	2009	2011	2016	2017	2018.10	
채권	국내채권	13.15	15.00	14.45	8.43	10.61	4.09	5.67	1.80	0.51	3.47
	해외채권	-	-	-	-	9.19	2.23	6.59	4.13	0.04	4.53
주식	국내주식	△24.88	39.46	△50.91	36.64	△39.00	51.00	△10.34	5.59	25.88	△16.57
	해외주식	-	-	-	-	△58.69	26.5	△6.90	10.63	10.62	1.64
대체투자	-	-	-	-	2.73	△0.92	10.22	9.91	4.53	7.57	
금융전체	5.56	18.37	1.34	11.41	△0.19	10.41	2.31	4.76	7.28	0.91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평가」 2019. 1. 31.

10) 국민연금공단도 대체투자는 최근(저수익, 저성장)에 와서야 급성장한 자산군으로 잠재위험 및 타 자산군과의 상관관계 등 risk-return profile이 아직까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는 의견이다.

요약 및 시사점

국민연금기금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배분에 따라 위험조정수익률은 비교 대상 연기금에 비해 양호하나, 누적수익률과 초과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부진¹¹⁾

-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와의 비교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2018년 운용수익률($\Delta 0.89\%$)과 샤프 지수(0.72)는 다른 공적 연기금보다는 양호하나 공제회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초과수익률($\Delta 0.68\%$)은 비교 대상 연기금에 비해 미흡한 수준
- 국외 연기금과의 비교 결과, 운용수익률과 샤프 지수(5년 1.06)는 양호하나 누적수익률은 낮은 편이고, 자산운용의 변동성은 크지 않은 수준

국민연금기금은 장기 운용성과 개선을 위해 자산배분 조정을 진행 중

- 국민연금기금은 장기 운용수익률 개선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10년간 채권 자산 비중을 줄이고 대체투자·해외자산 비중을 확대해 왔음
- 보건복지부는 해외투자자산과 위험자산(주식+대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2020~2024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 마련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재정전망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배분 조정 전략 마련 필요

- 장기 재정추계와 현행 보험료율에 근거하여 장기 재정건전성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배분 전략 수립을 고려할 필요
 - 현행 국민연금의 목표수익률은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되는 시기에는 수익률 목표치가 하향 조정되어 기금소진시기를 오히려 단축시킬 우려가 있음
 - 사회보험기금의 운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적 자금 운용과 장기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수익률을 설정을 고려할 필요
- 한편으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안전성도 고려될 수 있는 분산투자 전략 강구 필요
 - 해외 및 대체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저평가 자산을 발굴·투자할 수 있는 운용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
 - 목표수익률 상향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 본부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

11)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은 각 기금마다 재정방식, 재정상태, 재정추계, 잠재부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외 연기금과 공제회 기금의 수익률 등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통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조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재정추계 등은 고려하지 않고 여유자금(asset only)의 운용성과(수익률 등)만을 비교하였으며, 이는 국내외 기금과의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공단의 의견대로 재정추계 등을 고려하면 제도(보험료율, 수급연령 등)의 개선이 없는 현 상태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이미 예고되었기 때문에 운용성과에 민감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국 연금 운용 현황

우리나라 외 일본, 미국(캘리포니아주), 캐나다 등에서 노후보장 등의 목적으로 공공 기금을 운용 중¹²⁾

- 일본 연금자금운용기금(GPIF;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는 근로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부과방식(pay-as-you-go)이 적용되고 있음에 따라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요구 수익률을 달성함을 목표로 함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Cal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는 이사회에서 2013년 9월 투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금융·물리·인적자본의 3가지 형태의 효과적 운용 등 10가지 투자 원칙을 채택
-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는 장기 안정성에 기여하면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투자 다변화 정책을 추진
- 네덜란드 직역연금(Algemeen Burgerlijk Pensioenfonds)는 35~40년 가입자 기준 기초연금 급여액과의 합산 소득대체율이 은퇴 전 소득 70%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 따라 급여의 실질가치 보존이라는 운용 목표 달성을 위한 적립비율(적립자산/부채) 관리를 우선
- 노르웨이 국부펀드(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는 장기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 위험은 감수하되 기금의 운용목표가 수익률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아님

주요국 연금 제도 현황

기금명	한국 (NPS)	일본 (GPIF)	미국 (CalPERS)	캐나다 (CPPIB)	네덜란드 (ABP)	노르웨이 (GPF)
운용주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연금적립금 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	캘리포니아 기금관리이사회	캐나다연금 투자기획위원회 (IPC)	네덜란드 공무원 기금운용조직 (APG)	노르웨이은행 투자운용기관 (NBIM)
보험료율	9%	18.3%	8~13% (연금플랜 설계에 따라 차등)	9.9%	5~25% (평균 16.1% 수준)	해당사항 없음
재정목표	실질가치유지+ 위험한도내 추가수익	위험회피적, 100년 이내 재정 균형 달성	연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강화	향후 75년 예측기간 동안 제도 유지를 위한 수익 달성	급여의 실질 가치 보존	허용 가능한 위험 범위에서 가장 높은 해외구매력 달성
목표수익률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을 고려, 목표수익률 5.0% (2018년 기준)	장기 적립금의 실질운용수익률 1.7% 목표	장기 투자수익률 (discount rate) 7.0% 목표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연 3.9%	적립비율 목표치 104.2%와 지수연동화정책 에 따라 결정	실질수익률 4% (매년 펀드에서 국가 예산으로 4% 전입)
투자정책	해외투자, 대체투자 확대	주로 패시브 정책 (시장평균 수익률 달성)	위험 관리를 통한 최대 수익률 창출	투자다변화 (협소한 국내 의존도를 감소)	전략적 투자와 지수연동화를 통한 적립비율 관리	적정 위험수준에서 가능한 높은 수익률 달성
재정방식	부분적립식	부과식 (pay-as-you-go)	적립식 (확정급여형DB)	적립식 (5년치 적립 목표)	적립식 (확정급여형DB)	해당사항 없음
결산시점	12.31.	3.31.	6.30.	3.31.	12.31.	12.31.

주: 노르웨이는 국부펀드이고, 나머지는 연기금 펀드임. 이하 동일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해외 연기금의 기금관련 주요 현황』, 2015. 1. 및 각 연기금 연차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 일본, 미국(캘리포니아), 캐나다, 네덜란드는 퇴직연금 등 후생 목적으로 설립된 연기금인 반면, 노르웨이는 석유 수입원을 기반으로 정부지출에 기여하고자 운용되는 국부펀드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 소개 및 활용현황 국제비교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김윤수 경제분석관(788-4751)

한국(초저출산국), 스웨덴(출산회복국) 및 독일(출산저조국)의 육아휴직 관련 제도의 내용 및 제도 운영에 따라 산출되는 일차 자료를 제시

-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영유아를 가진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휴직제도는 여성의 고용안정, 자녀의 양육기간 보장 및 남성의 가사분담 가능성 확대 등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가능성
- 스웨덴과 독일의 출산율은 1999년 이후 반등에 성공하여 두 국가의 출산율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 한국의 출산율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한국은 스웨덴 및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자 수 및 월평균 급여액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스웨덴과 독일 모두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낮음

- 각국의 2017년 육아휴직자 수를 20~44세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은 한국이 0.7%로, 스웨덴(30.0%) 및 독일(8.8%)보다 크게 낮음
-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대한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액의 비율은 한국이 22.0%로, 스웨덴(47.7%)보다 많이 낮고 독일(22.5%)과 유사한 수준
 - 1인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액의 비율은 한국이 27.7%로, 스웨덴(68.2%)보다 많이 낮고, 독일(25.0%)과 유사한 수준
- 스웨덴의 2008년 출생아가 8세가 될 때까지 부모수당 평균 수급일수는 남성이 여성의 31.6% 수준
 - 독일의 부모수당 평균 수급일수는 남성이 여성의 26.8%에 불과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저해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육아휴직 기간 측면의 제도 개선을 통해 남성이 육아휴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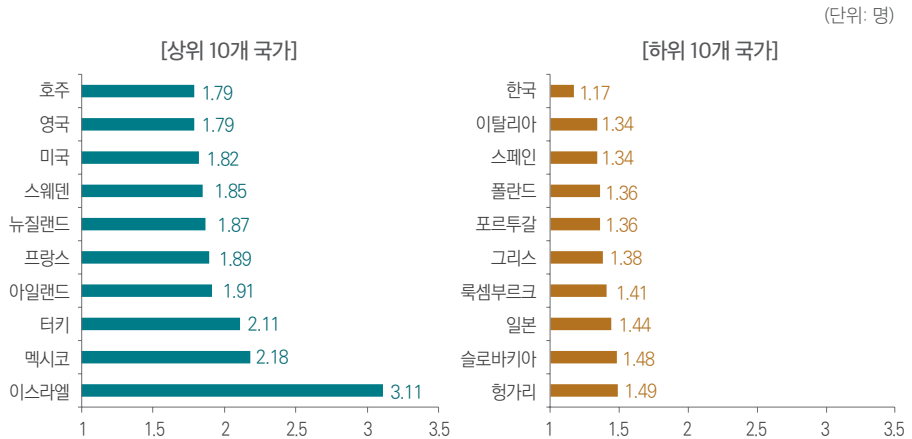
- 육아휴직 중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일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가정이 육아휴직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 유도 가능성
- 부모간 양도할 수 없는 휴직기간을 설정하거나, 부모 모두 육아휴직 참여시 추가 휴직기간을 부여하는 등 기간 측면에서의 인센티브 부여 가능
 - 현재 한국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소득보전율을 상향 적용하여 급여 측면의 인센티브만 부여 중

현황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음

- 2015년(1.24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1년 1.31명 기록 이후 16년간 줄곧 초저출산(1.3명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19년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¹⁾에 따르면, 인구 자연감소 시작 시점이 2016년 장래인구추계 결과²⁾에 비해 10년 앞당겨짐
- 2016년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68명이었는데, 동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집계되면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
 - 한국 다음 순위에는 이탈리아 및 스페인(1.34명), 폴란드 및 포르투갈(1.36명)이 있으나, 모두 초저출산 수준을 상회

[그림 1] OECD 회원국(상위 및 하위 10개국)의 합계출산율(2016년)



주: OECD에는 현재 36개 국가가 가입 중임
자료: OECD Data, "Fertility Rates"

- 인구보건복지협회(2017)³⁾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1+2순위)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64.3%), '일과 육아 양립 문화가 미흡'(33.3%) 등이 제시됨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1+2순위)로 '출산 및 육아 지원 확대'(50.4%),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42.0%),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32.9%) 등이 제시됨

1) 통계청은 5년 단위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2018년 까지의 인구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하여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수행(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2) 2016년 수행된 장래인구추계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됨(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2016)
3)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2017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영유아를 가진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육아 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영유아를 집에서 양육하는 데 따른 소득 상실분을 보조함과 동시에 휴직기간 이후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OECD⁴⁾는 출산휴가⁵⁾, 배우자출산휴가⁶⁾ 및 육아휴직⁷⁾으로 분류
 - 다만, 일부 국가(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의 경우 독자적인 출산 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제도 대신 육아휴직제도에 통합하여 운영
-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의 고용안정, 자녀의 양육기간 보장 및 남성의 가사분담 가능성 확대 등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할 가능성
 - 김인경(2017)⁸⁾은 여성가족패널(2007~2015년)을 이용한 분석에서 직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할 때 출산 의향이 증가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제공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의향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음

본 연구에서는 한국, 스웨덴, 독일의 육아휴직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육아휴직 정책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스웨덴과 독일의 출산율은 1999년 중후반 최저를 기록한 이후 반등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데 반해, 한국의 출산율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 스웨덴의 출산율은 1999년 1.5명에서 2017년 1.85명으로 상승하였고, 독일의 출산율은 1994년 1.24명에서 2017년 1.57명으로 상승
 - 다만, 스웨덴은 독일보다 출산율의 현재 수준이 높음
-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은 각국의 육아휴직 관련 제도상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 따라 산출되는 일차적 자료를 제시한 연구는 적음
 - OECD, European Commission 등은 각 회원국의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최대한 활용되는 경우의 휴가기간, 평균급여율 등을 비교·제시하고 있음
 - GDP 대비 모성·부모휴가 지출 비율 등 거시 지표를 활용한 분석 또한 수행된 바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⁹⁾

4) OECD Family Database, PF2.1: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
 5) 출산휴가(maternity leave, pregnancy leave): 취업 여성이 출산 전후로 떠나는 근로보호 휴가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는 최소 14주로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OECD 국가(미국 제외)는 휴직 기간 동안 현금을 지원
 6) 배우자출산휴가(paternal leave): 취업 남성이 배우자의 출산 전후로 떠나는 근로보호 휴가로, 국제협약상 배우자 출산휴가(또는 부성휴가) 관련 내용은 없으나, 각국은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
 7) 육아휴직(parental leave): 고용된 부모가 출산 전후로 떠나는 근로보호 휴가로, ① 부모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 ② 가족 단위로 기간이 주어져 부모 간 양도할 수 있는 휴직, ③ ①과 ②의 혼합 형태의 세 형태로 구분 가능[Blum, S., Koslowski, A., and Moss, P.(2018), "14th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8", 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and Research]
 8) 김인경,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17
 9) 박종서 외,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그러나 각국의 육아휴직 관련 수급자 수, 평균 사용일, 평균 수급액 등 실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일차적 자료를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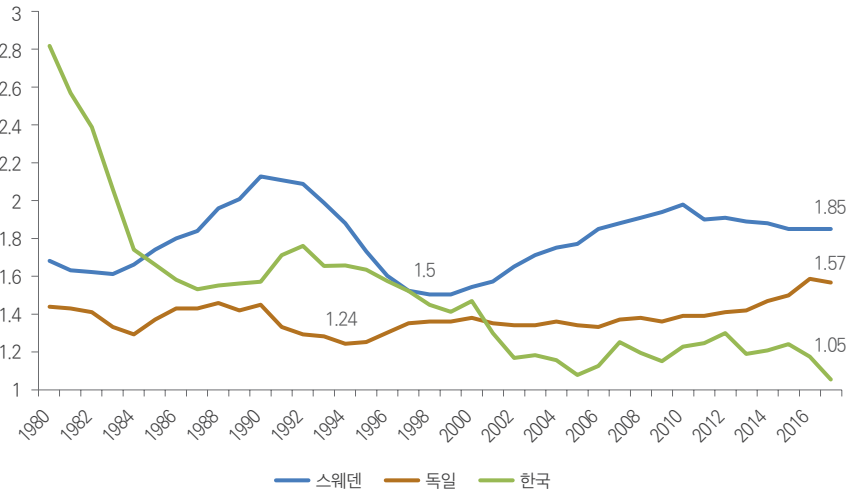
- 각국의 육아휴직 관련 제도의 내용 비교 이외에 제도 시행에 따른 미시적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더욱 풍부하게 획득할 가능성

● 본 연구는 초저출산국인 한국, 출산회복국¹⁰⁾인 스웨덴 및 최근까지 출산저조국¹¹⁾이었던 독일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운영에 따라 산출되는 일차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현실적 측면에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스웨덴은 1990년대 초 경제위기로 출산율이 하락하였으나(Bjorklund et al, 2001)¹²⁾, 육아휴직 등 다양한 아동·가족지원 제도 운영에 힘입어 출산율 반등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성공(이삼식, 2012)¹³⁾

— 독일은 2007년 육아휴직 및 보육정책 개혁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였으나(OECD, 2017)¹⁴⁾, 여전히 가정 내 전통적인 성 역할이 뚜렷하고 부의 장시간 근로 및 모의 근로포기 등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평가(보험연구원, 2017)¹⁵⁾

[그림 2] 스웨덴, 독일 및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1980~2017년)



자료: World Bank Database, "Fertility rates, total(births per woman)"

10) 출산회복국: 최근 10년간 합계출산율이 1.5 이상인 국가

11) 출산저조국: 최근 10년간 합계출산율이 1.5 미만인 국가

12) Bjorklund, Anders, Thomas Aronsson, Lena Edlund and Marten Palme, "New Crisis in the Population Issue", Stockholm:SNS Förlag, 2001

13) 이삼식, "외국의 보육·양육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Issue & Focus」, 2012. 12. 21

14) OECD, "Dare to Share: Germany's Experience Promoting Equal Partnership in Families", 2017

15) 김유미, "독일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및 효과", 「KIRI 고령화리뷰」, 2017

한국, 스웨덴, 독일의 육아 휴직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소개

가. 제도 소개

(한국) 8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근로자 부모 각각 최대 12개월간 유급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¹⁶⁾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¹⁷⁾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급하며,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지급(2019년 기준)

-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 가능¹⁸⁾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특례’(“아빠의 달”)에 따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 250만원)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시 급여는 한 명 분만 수령 가능하고,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파트타임 근로시 수령한 휴직급여는 부정수급에 해당

- 또한,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2개월 가능

- 지급액 산식: 통상임금의 80% * $\frac{\text{단축 전 근로시간} - \text{단축 후 근로시간}}{\text{단축 전 근로시간}}$

※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

(스웨덴) 부모가 기간을 공유할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제도(föräldrapenning) 운영 중¹⁹⁾

- 아동 1인당 12세까지²⁰⁾ 한 가정에서 총 480일(부모 각각 240일) 유급 휴직 가능

- 부모가 서로에게 양도할 수 없는 90일²¹⁾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양도 가능²²⁾

- 원칙적으로는 한 명의 아동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유급 육아휴직을 할 수는 없으나, 다만 출산 후 첫 1년간은 최장 30일까지 동시 유급 휴직 가능²³⁾

- 연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고용주 허용시 그 이상도 분할 사용 가능

16) 고용노동부[“2018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18.6), “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2019.1)],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참조

17)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참조

19) [Duvander, A.-Z., and Haas, L.,(2018) ‘Sweden country note’, in Blum, S., Koslowski, A., Macht, A. and Moss, P. (eds.)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2018*, Ann-Zofie Duvander(“스웨덴의 휴가제도: 스웨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일하는 걸까?”, 「국제노동브리프」 2017. 7), Försäkringskassan(스웨덴 사회보험청)(“Social Insurance in Figures 2018”, 2018), Försäkringskassan 홈페이지 등 참조

20) 다만, 2014년 1월 이전에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는 8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1) 일반적으로 ‘mammamånader’(mother’s quota) 및 ‘pappamånader’(father’s quota)라고 불린다고 함

22)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는 부모간 양도불가능한 일수가 60일이었음

23) 그 기간을 ‘Double days’라 지칭한다고 함

- 부모 각자에게 주어진 240일 중 195일에 대해서는 휴직 전 급여의 77.6%를 보전받고, 나머지 45일에 대해서는 일 180크로나(약 2만 3천 원)를 정액 수령
 - 다만, 195일간 일 수령액의 상한은 약 989크로나(약 12만 5천 원)
 - 만약 휴직 전 급여가 일평균 250크로나 미만이거나 휴직 전 근로종이 아닌 경우²⁴⁾, 240일 간 일 250크로나(약 3만 2천 원)를 정액으로 지급받음
- 육아휴직은 전일 휴직 외에 근로시간의 일정 비율만큼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수당 또한 단축비율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됨

(독일)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로 중단에 따른 소득상실분의 일부를 ‘부모수당’ 또는 ‘부모수당 플러스’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음²⁵⁾

- 부모수당(Elterngeld) 및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Plus)의 수급자격은 부모 개인별로 주어지고, 부부가 동시에 수당을 수령할 수 있음
 - 부모 각각 총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고용주 허용시 그 이상도 분할 사용 가능
- ‘부모수당’은 1명의 아동에 대하여 최대 14개월 신청 가능하며, 휴직자의 휴직 전 순소득²⁶⁾의 65%를 보전받을 수 있음
 - 부모 중 1인만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지급되며,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부모 모두 사용가능한 2개월이 추가적으로 지급됨
 - 휴직 중 파트타임 근무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순소득을 휴직 전 순소득으로부터 차감한 나머지 소득의 65%를 보전받을 수 있음
 - 지원액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월 1,800유로 및 300유로임
 - 휴직 중 주당 30시간 이상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부모수당 수급 불가
- ‘부모수당 플러스’(2015년 도입)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월 지급액은 ‘부모수당’보다 같거나 적으나 지급 기간이 확대됨(최대 14개월 → 28개월)
 - 부모 중 1인만 휴직시 수당은 최대 24개월 지급되며, 부모 모두가 휴직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8개월 사용 가능
 - 부모수당과 부모수당 플러스를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부모수당 1개월과 부모수당 플러스 2개월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
 - 부모수당 플러스를 선택한 부모가 최소 4개월 이상 연속으로 주 25~30시간 파트타임

24) 유급 육아휴직제도에 따른 수당은 휴직 전 근로종이 아닌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음

25) 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Bericht über die Auswirkungen der Regelungen zum Elterngeld Plus und zum Partnerschaftsbonus sowie zur Elternzeit』, 2018), BMFSFJ(『Elterngeld, ElterngeldPlus und Elternzeit: Das Bundeselterngeld』, 2018), BMFSFJ 홈페이지 등 참조

26) 순소득은 개인의 총소득으로부터 사회보장비 명목의 일정 비율을 차감함으로써 추정(Reimer et al., 2018)

근무를 함께 하면²⁷⁾ 부모수당 플러스 수령기간을 부모 모두 4개월 추가하는 ‘파트너십 보너스’(Partnerschaftsbonus) 가 제공됨

- ① 휴직 전 순소득(파트타임 근무에 따른 순소득 미차감)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의 1/2,
- ② 같은 상황에 대하여 부모수당 제도에 따른 지원액 중 작은 금액 적용
-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월 900유로 및 150유로임

상황별 ‘부모수당’ 및 ‘부모수당 플러스’ 수급액 비교

<상황 1>

휴직에 따른 소득상실분이 €2,000인 경우 부모수당 수급액은 월 €1,300($€2,000 \times 65\%$). 부모수당 플러스 이용시 ①은 €650(휴직 전 순소득 €2,000 $\times 65\% \times 1/2$)이고 ②는 €1,300. 따라서 부모수당 플러스 수급액은 월 €650임

<상황 2>

휴직 전 순소득이 €2,000이고 휴직 후 파트타임 소득이 €1,200인 경우 휴직에 따른 소득상실분이 €800인바 부모수당은 월 €520($€800 \times 65\%$). 부모수당 플러스 이용시 ①은 €650(휴직 전 순소득 €2,000 $\times 65\% \times 1/2$)이고 ②는 €520임. 따라서 부모수당 플러스 수급액은 월 €520임

<상황 3>

휴직 전 순소득은 상황 2와 같으나 휴직에 따른 소득상실분이 €1,500인바 부모수당은 월 €975($€1,500 \times 65\%$). 부모수당 플러스 이용시 ①은 €650($€2,000 \times 65\% \times 1/2$)이고 ②는 €975인 바 부모수당 플러스 수급액은 월 €650

(단위: 유로)

	상황 1	상황 2	상황 3
휴직 전 순소득(A)	2000	2000	2000
휴직 후 순소득(B)	0	1200	500
휴직에 따른 소득상실분(A-B)	2000	800	1500
부모수당	1300	520	975
부모수당 플러스	①	650	650
	②	1300	520
		520	975

자료: BMFSFJ, 「Elterngeld, ElterngeldPlus und Elternzeit: Das Bundeselterngeld, 2018

27) 부모 모두 최소 4개월 이상 연속으로 주 25~30시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는 경우를 의미

나. 운영 현황

(한국)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연평균 7.7% 증가하였으며, 지급액은 연평균 16.6% 증가

- 2017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약 9만 명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6,804억 원임
 -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 전체 육아휴직자 수로 나누어 산출한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약 63만원 수준임
-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율은 연평균 43.6%에 달하며, 육아휴직급여특례 이용자도 2018년 6,606명으로 2017년(4,409명)에 비해 49.8% 증가
 - 다만, 2017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3.4%(2017년)에 불과하여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임
 -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41.9%의 응답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제시²⁸⁾

[표 1] 성별 육아휴직자 및 지원금액 추이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인원			지급액	월 급여액	하한액 / 상한액
	전체	여성	남성			
2008	29,145	28,790	355	98,431	50만 원	
2009	35,400	34,898	502	139,724	50만 원	
2010	41,732	40,913	819	178,121	50만 원	
2011	58,134	56,732	1,402	276,261	월 통상임금의 40%	50 / 100만 원
2012	64,069	62,279	1,790	357,798	월 통상임금의 40%	50 / 100만 원
2013	69,616	67,323	2,293	420,248	월 통상임금의 40%	50 / 100만 원
2014	76,833	73,412	3,421	500,663	월 통상임금의 40%	50 / 100만 원
2015	87,339	82,467	4,872	619,663	월 통상임금의 40%	50 / 100만 원
2016	89,795	82,179	7,616	625,243	월 통상임금의 40%	50 / 100만 원
2017	90,123	78,080	12,043	680,430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	첫 3개월: 70 / 150만 원 3개월 이후: 50 / 100만 원

자료: 고용노동부(「2018 고용보험백서」 2018)를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10~2017년 중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률은 모가 38.3%, 부가 1.6%로 나타남
 - 또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모와 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7년 42.3% 및 1.1%

28) 그 외에도 승진 등 직장 내 경쟁력에서 뒤처짐(19.4%), 동료들의 업무부담(13.4%),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시선(11.5%) 등의 이유로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고용노동부,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용역, 2014)

[표 2]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0~7세 ¹⁾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²⁾								
모	부	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9.2	33.0	34.6	37.0	39.3	42.7	43.7	42.3
38.3	1.6	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2	0.2	0.2	0.3	0.3	0.4	0.5	1.1

주: 1) 2010~2017년에 180일 이상 계속 근무 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로 시산(2010~2017)에 따른 연령이며, 육아휴직 대상인 만 8세까지의 사용률은 향후 2018년 자료까지 기간 누적 시 산출 가능

2) 자녀의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 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

자료: 통계청, 「2018 일·가정 양립 지표」,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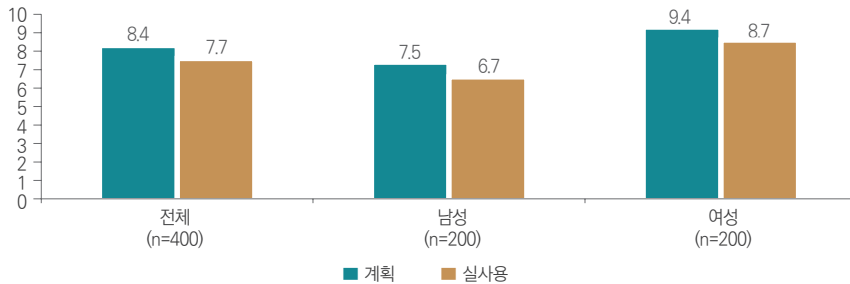
● 인구보건복지협회(2018)²⁹⁾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의 실제 사용기간은 평균 7.7개월(남성 6.7개월 및 여성 8.7개월)

— 실제 사용기간은 계획기간보다 평균적으로 0.7개월 적음

— 육아휴직을 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가장 큰 이유로 남성은 ‘퇴사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불안감’ (46.9%), 여성은 ‘회사의 복직요구’ (57.5%)를 지적

[그림 3] 육아휴직제도 사용 계획과 실제 사용 기간

(단위: 개월)



자료: 인구보건복지협회,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 2018.

(스웨덴) 2017년 수급자 수는 약 85만 3천 명이며, 월평균 수급액³⁰⁾은 평균적으로 1만 6,080크로나(약 203만 8천 원)³¹⁾에 달함

● 여성의 월평균 수급액은 1만 4,880크로나(약 188만 6천 원)로, 남성(1만 9,350크로나, 약 245만 2천 원)의 76.9% 수준

— 다만, 평균 수급일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음

29)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2018)에 따르면, 응답자는 30대가 63.8%로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사용 당시 대상 자녀 연령은 0~1세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군은 공무원을 포함한 정규직(89.0%)이 대부분이었음

30) 1개월을 30일로 가정하여 일평균 수급액에 30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31) 2018년 연평균 환율 126.74원/크로나 적용

[표 3] 부모수당 수급자 수, 평균 수급일 및 수금액(2017년)

(단위: 명, 일, 크로나)

	수급자 수	평균 수급일	일평균 수금액
여성	466,052	86	496
남성	387,286	40	645
총계	853,338	65	536

자료: Försäkringskassan 홈페이지

- 부모수당 수급 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모의 비율이 높음
 - 2017년 기준 전체 부모수당 수급 일수 중 모가 수령하는 비율이 72%에 달함
 - 다만, 2000년과 비교하여 전체 부모수당 수급 일수 중 부의 수급일수 비중이 16%p 상승하는 등 부의 육아휴직 참여 비중이 증대

[표 4] 부모수당 수급 일수 및 비율 변화(2000~2017년)

(단위: 1천 일, %)

연도	부모수당 수급 총 일수	비율	
		모	부
2000	35,661	88	12
2005	42,659	80	20
2010	49,719	77	23
2015	53,177	74	26
2016	53,776	73	27
2017	55,798	72	28

자료: Försäkringskassan(2018)

- 2008년 출생아에 대한 연령별 부모수당 수급 평균 일수를 보면, 아이가 1세인 경우에 모가 대부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세 이후부터 부의 사용 일수가 증가
 - 한 가정 내에서 모의 수급 일수가 전체 일수의 76%로, 부의 경우 부모 간 양도할 수 없는 기간(60일)³²⁾보다 약 45일가량을 더 사용하고 있음

[표 5] 2008년 출생아에 대한 연령별 부모수당 평균 수령 일수

(단위: 일, %)

연령		평균 일수		점유율	
		모	부	모	부
0세	7	7	0	100	0
1세	238	217	21	91	9
2세	99	63	37	63	37
3세	18	10	8	55	45
4세	14	8	7	54	46
5세	13	7	6	53	47
6세	14	8	7	54	46
7세	17	9	8	53	47
8세	27	14	13	51	49
총계	448	342	106	76	24

주: 부모수당을 전일로 수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 1일 기준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

자료: Försäkringskassan(2018)

- 부모수당에 따른 지출은 스웨덴의 총 사회보험지출 규모의 14% 수준
 -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운영비 제외)의 비율은 2017년 기준 4.9%인데, 2015년(5.4%) 및 2016년(5.2%)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

(독일) 2018년 부모수당 수급자 수는 135만 3,638명

- 전체 수급자 중 남성이 23.7%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모수당 플러스’ 미이용자 중에서는 27.9%, ‘부모수당 플러스’ 이용자 중에서는 11.5%를 차지

[표 6] 부모수당 수급자 수(2018년)

(단위: 명)

	'부모수당 플러스' 미이용자	'부모수당 플러스' 이용자		총계
		'파트너십 보너스' 미이용자	'파트너십 보너스' 이용자	
남성	378,319	54,600	39,628	432,919
여성	975,319	420,794	17,509	1,396,113
총계	1,353,638	475,394	32,481	1,829,032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독일 통계청), "Öffentliche Sozialleistungen", 2019

- 2018년 부모수당 수급자의 평균 수급일은 ‘부모수당 플러스’ 미이용자의 경우 9.3개월로, ‘부모수당 플러스’ 이용자의 평균 수급일(18.7개월)의 1/2 수준
 - 여성의 경우 ‘부모수당 플러스’ 미이용자 및 이용자가 각각 11.7개월 및 20개월을 사용하고 있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긴 기간 사용

[표 7] 부모수당 평균 수급 개월 수(2018년)

(단위: 개월)

	전체	'부모수당 플러스' 미이용자	'부모수당 플러스' 이용자
남성	3.8	3.0	8.9
여성	14.2	11.7	20.0
전체	11.7	9.3	18.7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2019)

- 2018년 부모수당 월평균 수급액은 740유로(약 96만 2천 원)³³⁾로, 2017년(731유로)보다 약 9유로 증가
 - 2018년과 2017년 모두 남성이 여성의 약 두 배 가량 수령

[표 8] 부모수당 월평균 수급액

(단위: 유로)

	2017년	2018년
남성	1,181	1,197
여성	595	599
전체	731	740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2019)

- 독일 연방정부는 부모수당(부모수당 플러스 포함) 명목으로 2016년 기준 60억 9,700만 유로를 지출³⁴⁾

육아휴직 국제비교

(육아휴직자 수) 한국의 경우 스웨덴 및 독일에 비해 20~44세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육아휴직자 수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육아휴직자 수를 동년 20세 이상 4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³⁵⁾로 나눈 값은 한국의 경우 0.7%(남성 0.2%, 여성 1.4%)
 - 스웨덴의 경우 30.0%(남성 25.8%, 여성 34.7%), 독일의 경우 8.8%(남성 3.8%, 여성 14.6%)
- 상기 값이 낮을수록 주 출산연령대에 속한 사람들 중 육아휴직을 한 부모의 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음

33) 2018년 연평균 환율 1,299.65원/유로 적용

34) BMFSFJ, 「Family Report 2017: Benefit, Effects, Trends」, 2018

35) 스웨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제활동인구 자료의 구조상 35세 이상 40세 미만 성별 경제활동인구를 추출할 수 없어 이를 45세 미만으로 확장하였으며, 국제비교를 위하여 한국과 독일 또한 기준을 통일하였음

— 다만, 산출된 값은 육아휴직 대상자 중 육아휴직자 수의 비율이 아니며, 국가별로 육아휴직자 개인의 평균 휴직기간³⁶⁾이 다를 수 있어 해석에 주의 필요

[표 9] 20세 이상 4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육아휴직자 수(2017년)

(단위: 천 명)

	한국			스웨덴			독일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육아휴직자 수(A)	90	12	78	853	387	466	1,829	433	1,396
20세 이상 4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B) ³⁷⁾	13,113	7,506	5,604	2845.2	1502.5	1342.6	20,819	11,278	9,541
100 × (A/B)	0.69	0.16	1.39	30.0	25.8	34.7	8.8	3.8	14.6

자료: 고용노동부(2018),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Försäkringskassan(2018), Statistics Sweden(『Labor Force Survey』), Statistisches Bundesamt(『Verdienste und Arbeitskosten』, 2018) 및 Statistisches Bundesamt(2019)를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육아휴직 급여액) 한국의 경우 스웨덴 및 독일에 비해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및 월평균 임금에 대한 월평균 급여액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액을 각국의 1인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³⁷⁾은 한국의 경우 27.7%임
 - 스웨덴(68.2%)보다 낮고, 독일(25.0%)과 유사한 수준
-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액을 각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으로 나눈 값은 한국의 경우 22.0%임
 - 스웨덴(47.7%)보다 낮고, 독일(22.5%)과 유사한 수준
- 상기 값들이 낮을수록 육아휴직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제20대국회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제안된 바 있음³⁸⁾

36) [표 5](p.53)에서 3~8세 아동에 대한 부모수당 평균 수령 일수는 20일 안팎인데, 이는 주어진 480일의 부모휴가를 부모가 연도별로 분할해서 사용할 가능성을 의미함. 이같은 상황 하 단년도 기준으로 집계된 육아휴직자 수는 동일한 아동에 대하여 연도별로 중복되어 집계될 수 있어 그 해의 육아휴직자 수를 20세 이상 4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이 높게 산출될 가능성이 있음

37) 일반적으로 20~30대가 주 출산 연령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으로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액을 나누어 산출한 값은 20~30대 1인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에 비해 작을 가능성이 높음(40대 이상의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1인당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한 이유는 국가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산출된 값의 절대적 수준에 대한 해석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38) 개정안의 주요 내용(대표발의자)은 각각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박광온의원),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유승민의원, 심상정의원, 양승조 전 의원),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급여액 가산(박광온의원),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권철승의원), 육아휴직 특례자와 남성 육아휴직자 급여액 가산(신보라의원) 등임.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표 10]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및 월평균 임금에 대한 육아휴직 실제 지급액 비율(2017년)

	한국	스웨덴			독일		
		총	남성	여성	총	남성	여성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액(A)	63만원 (\$557) ¹⁾	16,080크로나 (\$1,892)	19,350크로나 (\$2,276)	14,880크로나 (\$1,751)	731유로 (\$812)	1,181유로 (\$1,312)	595유로 (\$661)
1인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B) ²⁾	\$2,010	\$2,776			\$3,250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C) ³⁾	287만원 (\$2,539)	33,700크로나 (\$3,965)	35,700크로나 (\$4,200)	31,700크로나 (\$3,729)	3,245유로 (\$3,606)	3,896유로 (\$4,329)	2,485유로 (\$2,761)
100 × (A/B)	27.7	68.2			25.0		
100 × (A/C)	22.0	47.7	54.2	46.9	22.5	30.3	23.9

주: 1) 각국 화폐에 대한 달러화 환율은 OECD Exchange rates(2017)을 활용. 1달러는 각각 1130.4원, 8.5크로나, 0.9유로임

2) OECD (2019), Household disposable income (indicator), Accessed on 17 June 2019 사용

3) 근로자의 범위는 한국의 경우 임금근로자, 독일의 경우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풀타임·파트타임 및 한계근로자, 스웨덴의 경우 모든 부문(공공 및 민간 부문) 및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OECD의 "Average wages" 자료의 경우 2016년 미국의 PPP 환율을 적용하고 있어 상기 비교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4) 한국 및 스웨덴에서 가용한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액 자료와 연도를 통일하기 위하여 독일의 경우도 2017년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액을 사용하였음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 고용노동부(2018), Statistics Sweden("Salary dispersion by sector and sex 2017"), Försäkringskassan 홈페이지, Försäkringskassan(2018), Statistisches Bundesamt(2019) 및 Statistisches Bundesamt(2018), OECD[Household disposable income, Exchange rates]을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육아휴직 남성 참여) 스웨덴과 독일 모두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정도가 낮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

- 스웨덴의 경우 2017년 부모수당 수급자 수 비율은 남성이 여성의 46.5%였고, 2008년 출생한 아동이 8세가 될 때까지 부모수당 평균 수급일수는 남성이 여성의 31.6% 수준이었음
 - 독일의 경우 2018년 부모수당 수급자 수 비율은 남성이 여성의 38.8%였고, 부모수당 평균 수급일수 또한 여성의 26.8%에 불과
- 양국 모두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스웨덴은 육아휴직 기간 중 부모 상호간 양도할 수 없는 기간을 설정
 - 독일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보너스 기간을 제공

(사용자 편의성) 스웨덴 및 독일은 육아휴직 기간의 다회 분할 사용, 파트타임 근로를 통한 자발적 근로 유도 등 육아휴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

- (육아휴직 분할사용) 스웨덴은 연 3회, 독일은 육아휴직 전체 기간 중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각 가정의 육아수요에 걸맞는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허용
 - 현재 한국은 분할사용을 1회 허용하고 있어 스웨덴 및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유연성이 낮음
- (파트타임 근로 허용) 독일의 '부모수당 플러스' 제도는 파트타임 근로에 따른 소득을 수당 산정에 고려하지 않고, '부모수당' 제도에 비해 더 긴 기간 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
 -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하여 부모가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

(일시적 소득부족 대응방안) 육아휴직 중 일시적 소득부족에 파트타임 근로 등 가정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고려

- 육아휴직 중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일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가정이 육아휴직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성
 - 궁극적으로 육아휴직 중 경제적 어려움을 예상하고 육아휴직에 나서지 않는 가정에 대하여 육아휴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 가능성

(남성 참여 제고 방안) 급여 측면의 인센티브 외에도 기간 측면의 인센티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 가능성

- 현재 한국은 스웨덴 및 독일과 같은 방식 대신 '육아휴직급여특례'를 통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소득보전율을 상향 적용하고 있음
- 부모간 양도할 수 없는 기간을 설정하거나(스웨덴), 남성이 육아휴직 참여시 보너스 기간을 제공(독일)하는 등 기간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체계 설계 가능

시사점

한국, 스웨덴, 독일의 출산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개요

(한국) 유급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운영 중

- (출산전후휴가)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90일간 지급하며, 사용자는 임신부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함³⁹⁾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최대 180만원 지급⁴⁰⁾
 - 다만, 통상임금의 100%가 고용보험 지원분(1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초 60일간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원분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은 사업주 지급, 남은 30일은 고용보험 지급(180만원 한도)

※ 하한액은 최저임금액(2019년 기준 시간당 8,350원)임

출산전후휴가 소득보장 체계

	최초 60일	마지막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최대 월 180만원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18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최대 180만원 지급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최대 180만원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2019)를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출산전후휴가자 수는 2017년 8만 1,093명이며, 출산휴가 전 기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 금액은 1인당 약 300만원 수준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⁴¹⁾에 따르면, 출산휴가의 활용률(실제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있는 사업체 비율)은 62.8%로 나타남
-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일간(유급, 사업주 부담)이며, 필요시 5일(2일은 무급)까지 사용 가능⁴²⁾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의 활용률(실제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있는 사업체 비율)은 47%로 나타남
 - 실제 사용 일수는 평균 3.6일(3일 사용이 61.2%, 5일 사용이 28.0%)

39) 「근로기준법」 제74조 참조. 상기 규정은 근로자의 신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이며, 근로자가 휴가기간도중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음

40)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을 의미하며, 대규모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을 의미

41)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용역, 2017

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참조

(스웨덴, 독일) 스웨덴은 무급, 독일은 유급 출산휴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출산휴가) 스웨덴은 무급 출산휴가(gravitetsspénning)를 최대 14주 사용할 수 있고, 독일은 총 14주 간 유급 출산휴가에 대한 수당(Mutterschaftsgeld)이 지급됨
 - (스웨덴) 다만, 출산 직후부터 육아휴직에 따른 부모휴가수당 수령 가능
 - (독일) 출산휴가 전 3개월 평균 순소득의 100%(상한선 없음) 수령
 - 3개월 평균 순소득의 100%가 390유로(약 50만 7천원)를 초과하는 경우, 390유로까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초과분은 고용주가 지급해야 함
- (배우자출산휴가) 스웨덴은 ‘임시 부모수당제도(tillfällig föräldrapénning)’를, 독일은 육아휴직 제도를 배우자 출산휴가처럼 활용가능
 - 스웨덴에서는 ‘임시 부모수당제도’를 통해 최대 10일간 유급 휴직⁴³⁾할 수 있으며, 휴직 중 휴직 이전 소득의 77.6% 지원(소득상한은 연 348,750크로나)
 - 2017년 기준 상기 제도를 활용한 사람의 99%가량이 남성이었는데, 평균 수급일은 9.6일이었고, 평균 수급액은 979크로나(약 12만 4천 원)였음

43) ‘임시 부모수당제도’는 아이가 12살이 될 때까지 총 120일(연간 10일 한도)의 유급 휴직을 허용

nabo Industrial Trends & Issues

산업동향 & 이슈

2019년 7월호 통권 제22호

발행일 2019년 7월 25일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국회 내·외부 전문가들의 예산·결산·기금의 분석, 경제 및 조세·재정정책의 분석,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논문 공모 마감일 및 학술지 발간일

공 모 마감일 상반기 3월 31일, 하반기 9월 30일
학술지 발간일 상반기 5월 31일, 하반기 11월 30일

-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 공모 마감일 이후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음

논문 제출 및 문의처

제출방법 e-mail 제출(journal@nabo.go.kr)
문 의 처 예산정책연구편집위원회
전 화 02-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건전한 재정
희망한 미래

naboo Industrial Trends & Issues
산업동향 & 이슈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7-001585-06